

碩士學位論文

女性犯罪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高 泰 河

碩士學位論文

女性犯罪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昌 君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高 泰 河

女性犯罪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昌 君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7月 日



高泰河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0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여성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제1절 여성범죄의 의의 및 특성	4
1. 여성범죄의 의의	4
2. 여성범죄의 발생원인	5
3. 여성범죄의 특성	10
4. 여성범죄의 현대변화	12
제2절 여성범죄의 유형별 특징	13
1. 성별구분에 따른 특징	13
2. 성과 관련된 특징	15
3. 재산범과 여성범죄	18
4. 폭력범과 여성범죄	20
5. 약물 및 알코올과 관련된 특징	24
6. 사회구조의 변화와 여성범죄	28
제3장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동향	32
제1절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발생 현황	32
1. 개 관	32
2. 여성범죄자의 죄질별 범죄자수 분포	37
3. 여성범죄자의 죄명별 범죄자수 분포	39

제 2 절 여성범죄자의 환경 및 발생원인별 현황	40
1. 연령별 여성범죄자 분포	40
2. 교육정도별 여성범죄자 분포	43
3. 생활환경 및 결혼유무별 여성범죄자 분포	45
4. 여성범죄자의 공범관계별 분포	49
5. 발생원인별 여성범죄자 현황	50
6. 전과자별 여성범죄자 분포	51
7. 소녀범죄자 분포 현황	52
제 3 절 여성범죄자의 처분현황	53
1. 통계의 비교 분석	53
2. 여성범죄자의 유형별 처분 현황	54
제 4 장 여성범죄의 대책	57
제 1 절 예방 대책	57
1. 교육적 예방책	57
2. 사회·정책적 예방책	61
제 2 절 사후 대책	63
1. 시설내에서의 처우 개선	64
2. 사회적 처우문제 개선	71
3.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처우 개선	74
제 5 장 결 론	77
참 고 문 헌	80
Abstract	86

표 목 차

<표 1> 형법범과 특별법범 여성 범죄자수 분포	14
<표 2> 약물의 종류 및 약리작용	24
<표 3> 우리나라 인구현황	33
<표 4> 성별 전체 범죄자수 분포	34
<표 5> 여성범죄자 현황	36
<표 6> 여성형법범의 죄질별 범죄자수 분포	38
<표 7> 여성범죄의 죄명별 범죄자수 분포	40
<표 8>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42
<표 9> 여성범죄자의 교육정도별 분포	44
<표 10> 여성범죄자의 생활환경별 분포	46
<표 11> 여성범죄자의 결혼유무별 분포	47
<표 12> 미혼여성 범죄자 부모 관계별 분포	48
<표 13> 여성범죄자 공범관계별 분포	49
<표 14> 여성범죄자의 발생원인별 분포 현황	50
<표 15> 여성범죄자의 전과자별 분포	51
<표 16> 청소년범죄자 현황	52
<표 17> 전체범죄자 및 여성범죄자 처분 현황	53
<표 18> 여성범죄자 처분결과	54
<표 19> 형법범 처분현황	55
<표 20> 특별법범 처분현황	56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외국의 경우는 그동안 여성범죄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여성범죄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각국의 추세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까지도 여성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 주로 여성범죄의 실태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 여성범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서는 범죄 발생율이 남성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고, 범죄 증가율 또한 급격하지 않고 10%내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 범죄의 죄질이나 위험성이 덜 심각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성범죄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도 가정기능과 가족관계의 중요성, 교정처우의 합리화, 학교 및 사회교육의 개선 필요성 등을 여성범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 다만 여성범죄가 남성의 그것에 비하여 수치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성범죄 자체의 절대수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생활양태가 남성의 생활상과 유사해지면서 여성범죄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형사사법에 있어서 여성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형사정책에 올바르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성범죄의 연구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¹⁾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구조와 형태적 변화, 가정 내에서의 역할 변화,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영역의 확대에 기인한 여성의 범죄에 대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여성범죄와 사회적 역할, 여성범죄와 경제활동에 대하여 관련성을 검토하여 여성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박미숙,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현황과 과제”,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호, 2000, p. 22.

第2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1. 研究의 範圍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범죄가 과거에 비하여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최근 10년간의 여성범죄 현황 및 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범죄의 동향과 전체 범죄자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범죄자의 특성 및 여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이용된 통계는 주로 법무연수원에서 발행한 범죄백서와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여성범죄의 연구목적을 우리나라의 현황과 연계하여 설정하였고 연구의 방법과 연구의 절차를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여성범죄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로서 우리나라 여성범죄 현상의 배경과 여성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성, 재산, 폭력, 약물 등과 관련한 여성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문헌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동향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범죄의 발생현황을 남성범죄자수와 비교하였다. 또한 여성범죄 발생 원인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생활환경별, 공범관계별, 발생원인별, 전과자별 동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체 여성범죄자 중 소녀범죄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남성과 여성범죄자의 기소율을 파악함으로써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범죄에 관한 교육적 및 사회정책적, 사전·사후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분석한 전체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맺었다.

2. 研究의 方法

본 논문은 주로 문헌 분석을 토대로 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대상인 여성범죄의 개념과 특성 등에 대하여는 이미 연구되어 발표된 논문과 저서 등을 토대로 고찰하였다. 또한 여성범죄에 관련한 현황 및 증가추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들은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비롯한 각종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을 통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물론 현재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 제공 또는 발간되는 자료들은 통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신고되거나 처리된 사건들은 제대로 통계처리가 되어 있으나 신고 또는 기록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은폐범죄와 기록된 범죄간에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식 통계자료를 완전히 신뢰하거나 여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실제과악은 어렵다고 주장²⁾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공식통계에 의한 결과의 도출이 사소한 오차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 및 현황, 특성, 추이 등의 결과를 얻는데 커다란 왜곡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각종 공식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범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범행이전의 사전 예방대책과 사후 대책으로 나누어 각종 연구 자료 및 문헌을 토대로 여성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을 강구하였다.

2) 황경희, “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p. 3

第2章 女性犯罪에 관한 理論的 考察

第1節 女性犯罪의 意義 및 特性

1. 女性犯罪의 意義

여성범죄문제는 오늘날 범죄자와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처우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활발한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여성범죄란 여성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으로 분류상 개념에 불과하며 특별한 범죄의 종류가 아니며 법적인 개념 또한 아니다. 여성범죄란 특별한 범죄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한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복종성·내향성·수동성이 강한 반면 자신감이 결여되고 수치심·불안감을 더 느끼므로 남성보다는 범죄의 위험에 빠질 확률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생리적으로도 출산과 육아의 소임을 당하므로 생활의 전면에서 활동하지 않게 되므로 범죄로의 접촉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다. 또한 소년기에는 부모의 보호속에 성장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보호속에서 생활하므로 악의 세계에 접촉이 차단되고 종교적 감화에도 민감하므로 도덕적의식형성에 유리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지위는 단지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서만 파악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서 괄목할만한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다.³⁾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자 수는 1993년 1,779,228명에서 2002년 2,297,030명으로 129%의 증가를 보이나 여성범죄자의 경우 1993년 207,707명이었던 범죄자 수가 2002년에는 342,338명으로 증가하여 164% 정도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전체 범죄 증가율보다 약 35%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성범죄자의 경우 1993년 1,531,245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1,954,692명으로 증가하여 10년간 127%의 증가율을 보여 남성과 비교시에도

3) 조희진,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책”, 「여성범죄와 교정대책」(한국교정학회 제15회 학술발표회 자료), 1998, p. 98.

약 37% 정도 여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범죄는 주로 남성이 저지르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선입견이 무색할 만큼 여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행위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 나라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이 도덕적 기준이 되는데 오늘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남·녀평등 사상에 따른 생활조건의 변화 그리고 도시화, 국제화 등의 시대적 변천에 수반한 여성의 특성에 따라 남성과는 다른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범죄의 대상과 범죄의 유형 또한 다양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범죄의 남성화 경향 또한 뚜렷하여지고 있다.

2. 女性犯罪의 發生原因

여성범죄에 대하여 범죄학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여성과 남성이 행하는 범죄는 공통점이 있으나 여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건 즉 역사적·사회적·경제적 경험을 통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남성범죄 연구에 따른 이론을 여성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범죄에 관한 이론들은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여성범죄,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여성범죄,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여성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형법범에 대해서 보면 여성비가 전체의 11%를 보임으로써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대체로 공격적인 경향보다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 조건 때문에 특히 강제력을 수반한 범죄가 용이하지 않고 사회가 여성에 주입시킨 여성의 성역할 때문에 사회활동이 적은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죄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범죄 비율은 적었지만 70년대 이후 여성권익의 신장이나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규모의 확대에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활발함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범죄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1) 생물학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은 여성범죄자가 정상적인 일반여성과는 다른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⁴⁾

여성특유의 생리기란 월경초조, 월경, 임신, 출산, 산욕, 수유, 폐경기 등이다. 무경험한 젊은 여성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분만할 경우 분만에 따른 고통에 의한 정신적 상태의 이상으로 영아살인 등의 범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이 월경 증후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형태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심하면 정신질환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자살이나 살인까지 초래하는 무서운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월경 증후군의 증상으로 긴장과 불안, 초조, 우울증을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적개심을 보이기도 하며 자제력이 극히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체중의 급격한 증가, 통증의 심화, 정서적 불안고조, 대인 관계 불가 형태로 나타날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이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은 이 시기에 내분비의 평형장애로 정통성의 부조화를 느끼게 마련이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기에는 비교적 쉽게 범죄로의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 보고있다. 여성들의 77%가 생리기에 작업능력의 저하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조사되었고 월경 중 볼 수 있는 정신현상으로 정신혼란, 감정자극, 불화, 질투, 피로, 충동성을 지적하고 있으며⁵⁾ 여성범죄의 특성이 이러한 월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들은 분만기에 흔히 영아살인 등을 범하는데 특수한 여성의 생리적, 심리적 현상과 관계한다고 보고 있고 생물학적 원인의 또 다른 하나로 여성의 임신을 들 수 있다. 임신 그 자체가 곧 낙태죄나, 영아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임신도 월경과 마찬가지로 질투 감정의 느낌, 신체이상에 따른 다양한 정신 이상 증세의 경험, 감정의 변화 등을 나타내며, 감정의 이상은 히스테리로 나타나고 이러한 경우 강박관념이나 망상 등이 더하여지면 난폭한 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원인 중 여성의 폐경이 있고 폐경기에 이르면 범죄행위에 크게 영향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월경의 폐지가 여성의 심리나 생리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

4) 한휘전,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1992, p. 17.

5) 박봉진,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p. 394.

외로 큰 까닭이다. 즉, 이 시기에 신체상의 위축은 물론 지방의 증가·주름살·사지근육의 저하·성적매력의 감소에 의한 심리적으로 불안정·불면증·정신력의 위축·초조감·불안감·우울증 등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폐경기를 전후하여 감정으로 인한 방화 같은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폭력범죄 외에도 절도죄, 위증죄 등 비율도 높다.⁶⁾ 또한 이 시기에는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하여 범죄적 위기에 더 직면한다는 견해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성특유의 생물학적 기능이나 특성과 범죄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기 어려우나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이 최소한 범죄를 유발하거나 범죄발생에 기여하는 간접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2) 심리학적 원인

여성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방법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프로이드식 견해와 사회적 관점에서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의 견해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심리적 발전관계에 있어서 부적응이나 결함 또는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장애나 어려움이 여성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⁷⁾

우선 정신분학적 입장에서 인간심리를 구성하는 세 요소 중 초자아와 자아가 약하여 본능적, 반사회적 충동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킨다고 전제하고 있다. 여성은 심리적 형성 발달과정에서 남근에 대한 열등감과 남근숭배의 성향을 갖게 되며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극복해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남근숭배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 동성애적이 되거나 남성이 되고자 하는 시도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비행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본질적으로 수동성과 감정성이라는 심리상의 특징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지적되어진 여성심리상의 특성이 허영심, 자아 중심적 사고 등이라는 점에서도 여성이 감정의 지배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으며, 여성범

6) 강석산,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1989, p. 16.

7) 박경선, “여성의 특성과 여성범죄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p. 8.

죄가 여성심리의 특수한 수동성이나 감정성과 관련하여 나타난다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에 의한 원만한 가정생활 유지 또는 의존관계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수동적 심리현상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여성은 감정에 따라 쉽게 감동하며 장래행위를 예측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며 감정이 생각과 행동 사이에 개입함으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 생략되어 여성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원시성 단락의 문제가 나타난다. 단락성 자체적 의미에서 볼 때에는 많은 범죄발생이 가능하며 특히 정서가 인격전체의 통제에 의하지 않고 표출되는 히스테리 흥분 상태의 원시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원한, 질투, 의심과 같은 여러 감정이 강렬하게 작용하여 살인과 같은 중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여성의 질투와 원한은 여성범죄 발생의 심리학적 요소로 중요하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분노는 폭발적이면서 일시적인 반면 질투는 애정감정이 심화되면서 히스테리적 질투나 망상 같은 정신병적 질투심이 생기거나 살상 또는 방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여성에게 안면 또는 음부 상해를 기도하는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임신 중이거나 분만직후의 여성의 낙태, 영아 살해 실행 등 중대한 범죄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분노시에는 감정이 우선시 되어 행동하게 하나 이와 반대로 원한인 경우 영속적인 감정이며 분노의 감정 이후 일어나는 행위로 지적 작용이 가해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범죄행위화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원한은 일시적으로 참고 있으나 감정이 지속적으로 잔류하여 계획적이고 집념을 가지고 범죄로 야기될 수 있다. 여성은 성적인 침해를 받는 경우 원한을 사고 살인, 방화 등의 중대 범죄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빈곤하고 좋지 않은 가정환경, 부모와의 갈등, 다른 가족에 관계된 문제들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있다. 여성범죄는 부모와 동일시하지 못하는 소녀, 동시에 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부모의 무능력이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가정 환경 결핍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여성의 범죄형태는 직접적 범죄 형태도 있으나 우회적으로 간접공격 경향이 있

으며 자신의 감정을 자기의 자녀 또한 주위 사람에게 표출하기도 한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심리적 구조면에서 나약하기 때문에 향수형 범죄로의 형태로도 나타나며 이는 또 다른 고민을 야기하고 고민에 의한 공상으로 끝나기도 하나 행동으로 옮겨 향수에 의한 방화 등을 저지르기도 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가 나약하고 심리적인 면 역시 온순, 나약하다. 그러나 여성적, 심리적 특성이 범행동기와 합치될 때에는 여성범죄의 원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3) 사회학적 원인

일반적으로 남성은 사회를 구성하고 지배하는 입장에 있는 반면 과거 여성의 경우 창조적 활동이 억제되고 결핍된 채 종속적인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아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로 가정환경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선진국 문물의 적극적 유입으로 여성의 활동 영역이 가정에서 사회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사회 진출의 증가는 여성범죄자 양산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심과 자신의 지각이 전통적이고 종속적 사고에서 개방된 사고로 전환됨으로서 범죄의 기회도 많아지고 그 방법 또한 다양화되었다.

여성범죄의 사회적 경향을 보면 최근까지도 단독 범행보다 남성 범죄의 공범 역할이 많은 편이다. '여성범죄의 남성화'라는 지적처럼 종래의 단순한 가치구조에 비하여 복잡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범죄에 있어서 사회학적인 원인론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은 비교적 비자립적이고 생존 경쟁에 투신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행동범위가 좁고 가정중심이기 때문에 범죄의 기회와 필요성이 줄어든다. 둘째, 여성은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사법적으로 보호되고 특히 여성범죄에 대하여는 사회가 비교적 관용적이므로 암수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이 엄격하지 않는다.⁸⁾ 셋째, 서더랜드(Sutherland)는 범죄의 성에 의한 비율은 사회적 지위에 의해 다르고 여성의 권리가 많이 인정된 나라, 농촌보다 도시, 연령이 상승할수록, 범죄 다발 지역일수록 여성범죄

8)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1998, p. 107.

는 증가한다고 한다.⁹⁾ 넷째, 폴락(Pollak)에 의하면 여성범죄의 은폐성을 특징으로 지적하고 여성범죄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것은 은폐성에 의한 통계수치의 신뢰의 문제이고 범죄적 성향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¹⁰⁾

여성범죄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입장과 범죄와 관련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범죄성과 성별 차이는 남녀간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사회학적 입장에서 보면 남녀간의 사회적 지위의 점차적인 접근은 남녀의 범죄율이 점차 접근함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범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원인을 기초로 하여 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역할의 특수성을 기하여 범죄를 남성에 비하여 덜 저지른다고 보고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러한 여성범죄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女性犯罪의 特性

죄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 중 하나가 성별이라 할 수 있다. 여성범죄가 남성 범죄에 비교하여 적고, 남성범죄와는 다른 특색을 지니며 죄명별로 보더라도 여성범죄의 대부분은 절도, 장물, 사기죄 등 재산범이 특히 많고 영아살해, 낙태, 유기(영아유기)죄의 범죄율도 높게 나타난다. 여성범죄는 주로 불성실, 부정직성에 있고 살인방법으로는 주로 독살이 많으며 여성의 생리적 특성상 월경, 임신, 갱년기 등에 정신적 변화로 인한 범죄율이 증가하고 특히 절도, 방화 등의 범죄는 월경시에 주로 범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적 진출이 많은 문명국일수록 여성범죄율은 높으나 인류 국가가 꼭 그러하다고 볼 수 없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함께 역사적, 사회경제적 경험을 하게 되므로 남성과는 다른 행동 양식을 갖게 되므로 남성범죄에 관한 범죄 이론이 여성범죄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며 여성범죄에 대한 분석이

9) 이보녕, “여성범죄 현황과 원인·대책”, 「단국법학」 제6호,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1997, p. 506.

10) 상계논문, p. 506.

성차별주의적 입장에서 볼 수도 있다.

여성범죄가 범죄학의 연구대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이제까지는 주로 남성범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또한 일반적으로 범죄학자들이 범죄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는 남성범죄 위주의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에 비하여 연구가 비교적 적으나 1980년대 이후 사회적 관심과 연계한 여성범죄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범죄의 양적, 질적 특징을 설명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여성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다수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성범죄의 특성으로, 첫째, 여성범죄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로 압도적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은 신체적, 생물학적 조건과 관련이 있다. 둘째, 심리적·생리적으로 여성은 범죄를 범하는 것에 능률적이지 않다. 셋째, 생리는 범죄의 직접원인으로서 단일한 근본문제는 아니며 병적, 정신적, 신체적 상태와 이어지는 경우에 범행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넷째, 살인·방화 등 격정에 의한 범죄는 월경과 관련성이 강하며 특히 월경직전부터 월경개시에 걸친 범죄 빈도가 높다. 다섯째, 여성범죄자는 누범자가 많고 일반적으로 저지능, 정신박약자, 정신질환자가 많다. 즉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지수(IQ)가 낮은 편이다. 여섯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여성의 범죄도 증가한다. 일곱째, 여성은 가정생활에 밀착되어 있음에 따라 자녀의 출산 또는 육아, 가사에 관한 범죄가 빈번한 것은 복잡한 인간관계의 결과로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여덟째,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인내와 복종성이 수반되므로 참기 힘든 상태에 이르면 일거에 이상한 행동으로 표출된다. 아홉째, 남성에 비하여 여성범죄는 기혼자의 범죄율이 높다.¹¹⁾ 열째, 초범 연령이 12~13세로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며, 어린 나이에 성적인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여성범죄는 대체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위험요소가 적은 유형의 범죄이다. 남성에 비하여 덜 계획적이며 범죄의 분류에 있어서도 위험성이 적은 범죄유형에 해당한다. 여성범죄는 주어진 기회에 편승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의

11) 박봉진, 전계논문, pp. 4-5.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절도죄이다. 그 외에 위증죄, 무고죄, 모욕죄, 위조죄, 유기죄, 아동학대죄, 음행매개죄에서 여성범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¹²⁾ 이러한 여성범죄에 대하여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범죄양상이 달라져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여성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범죄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는 여성범죄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형사정책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女性犯罪의 形態 變化

남성과 여성범죄의 차이는 사실상 양적인 측면보다 형태변화적 측면이 중요하다. 여성범죄의 형태변화는 여성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특성상 수동성이라는 것이며 이를 피해자적 특성이라고 한다. 여성범죄의 특성은 다양하게 반영되어 여성 본래의 생활사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신적 궁박 상태나 곤궁한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낙태, 유기, 영아살해 등이 있는 반면 폭력을 사용하는 강도·상해·폭력·살인 등의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여성범죄는 첫째, 영아살해, 유기, 낙태 등 출산·양육과 관련된 범죄가 많다. 둘째, 폭행과 상해가 존재하며 살인과 명예훼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셋째, 여성범죄 중 재산범죄인 절도가 가장 많다.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해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남성에 비하여 주로 여성은 수동적 성향의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로 범죄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원제공을 한다거나 범죄를 방조하거나 돕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범죄는 반사회적 성격이 약하고 동기와 수단의 측면에서도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범죄의 또 다른 특징으로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며,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영역이 남성에 비하여 좁기 때문에 대개 비공개적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절도의 경우 대부분은 마켓에서의 범죄로 최근의 매장 형태가 셀프서비스 형태이고 남성에 비하여 물건을 사는 기회가

12) 상계논문, p. 4.

많은 여성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살인죄의 여성비가 높은 것은 영아살인죄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일반적 살인에 대해서도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 즉, 애인, 친구, 자녀 등이고 동기 또한 원한, 질투 등 감정적인 것과 얽혀 기인하는 것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第2節 女性犯罪의 類型別 特徵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그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범죄자 중 여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절도, 낙태, 간통, 유기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죄 등이다. 이 중 윤락행위방지법위반, 간통이 높은 구성비를 갖는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 내지 법규에 기인하는 것이고 낙태, 유기, 영아살해 등은 출산, 육아라는 생물학적 특성과 깊이 관련하며 폭력이 요구되는 강도, 상해, 살인 등의 범죄는 전체범죄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¹³⁾ 여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하며 성, 재산, 폭력, 정치, 약물 등과 관련된 범죄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범죄의 유형에 따른 여성범죄의 특징을 검토하기로 한다.

폐쇄적인 의식구조에서 개방적 의식구조로의 전환은 정치·경제·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범죄의 형태 및 질적인 면에서도 과거의 여성범죄에 비하여 변질되어지고 있다. 남녀간의 범죄양상의 차이는 성차에서 오는 생물학적 원인일 수도 있으나 남성에 비하여 아직도 사회영역이 협소하고 대인관계의 범위도 아직은 한정되어 있는 사회적 원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 性別區分에 따른 特徵

여성범죄라 해서 그 어떤 학문적이고 법률적 의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남녀의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여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서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일 뿐이다.

13) 이보녕, 전제논문, p. 506.

전제 범죄발생 가운데에서 남녀의 성별에 따른 범죄발생과 그 증가 또는 감소추세를 살펴봄으로서 여성범죄의 발생빈도 및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여성범죄자의 증가추이를 보면 1981년에 86,907명이던 여성범죄자가 1990년에는 140,831명, 2000년에는 328,126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¹⁴⁾ 또한, 1993년 기준을 보면 207,707명이던 여성범죄자는 2002년에는 342,338명으로 증가되어 10년간 약 164%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도에 형법범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별법범은 급한 감소를 보이는 것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범죄자를 특별법범으로 분류하던 2001년과 달리 2002년부터는 형법범에 포함하는 분류형식을 취함에 따른 것일뿐 실제적인 폭발증가세는 아니다.

<표 1> 형법범과 특별법범 여성 범죄자수 분포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형 법 범	특 별 법 범	계
1993	80,736 (38.87)	126,971 (61.12)	207,707 (100)
1994	90,365 (40.31)	133,753 (59.67)	224,124 (100)
1995	114,015 (44.60)	141,620 (55.39)	255,635 (100)
1996	134,883 (46.80)	153,317 (53.19)	288,200 (100)
1997	120,607 (43.38)	157,400 (56.61)	278,007 (100)
1998	143,011 (42.17)	196,093 (57.82)	339,104 (100)
1999	151,277 (41.59)	212,411 (58.40)	363,688 (100)
2000	122,459 (37.32)	205,667 (62.67)	328,126 (100)
2001	123,177 (35.72)	221,578 (64.27)	344,755 (100)
2002	181,124 (52.90)	161,214 (47.09)	342,338 (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4~2003.

14) 대검찰청, 「범죄분석」, 1982-1991.

2. 성과 관련된 特徵

1) 여성의 생리기와 여성범죄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범죄에의 가담성이 낮다. 특히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범죄 유형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특유의 생리기에는 전술한 내용과 반대로 범죄에의 참여 성향 및 공격적인 성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여성의 특성인 생리기에는 내분비계의 평형장애로 인한 정신적 부조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범죄 발생의 계기가 되어 범죄에 이른다는 견해가 있으며 여성의 생리적 구조로서의 여성의 성이 낙태, 영아 살해 등과 밀접하게 관계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이러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감정의 자극에 의한 불화, 지나친 질투, 극도의 피로성,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므로 여성범죄가 월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생리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월경직전에서 월경 제1일에 특히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이 시기에는 충동적 자극에 저항력이 극히 약화되어 매장에서의 절도를 쉽게 하게 되는 경우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의 중대한 기본적인 여건인 임신에 이른 후 분만기에 도달하고 분만기에는 특히 영아살해, 낙태 등의 범죄를 범하는데 이 또한 그 시기의 생리적, 심리적 현상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분만기에는 분만과 관련하여 흥분상태와 심신상실상태, 기억장애, 몽롱상태, 그 밖의 정신병 상태 등으로 나타나 이는 곧 정신상태와 연계된 상태로 범죄로의 유혹과 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은 남성과 달리 여성 특유의 성적 기능과 특이한 육체적 기능이 결국은 남성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결과로 이어지며 여성의 성은 곧 생리기를 의미하는 것과 같으며 여성의 실질적인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이기도 하다.

여성과 남성의 범죄에 따른 성별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변수나 범죄의 원인에 따라 여러 형태로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여성의 성에 의한 범죄를 이해하는데 여성의 성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할 수 있다.

2) 낙태와 여성범죄

낙태는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 의도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시키거나 또는 태아자체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범죄를 말한다.¹⁵⁾ 낙태행위를 범죄로 결정하여 처벌하게 되는 것은 인도주의 사상과 산아 제한이라는 인구정책 입장에서 고찰할 수 있으나 산아를 독려하는 지원제도로의 전환점에서 정책에 반하여 최근에는 오히려 의학적 기술의 남용형태로 이용되어 임신 중에 기술적 추적에 의하여 여아인 경우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생명유지 상태와 관련 없이 강제하여 낙태시키거나 출산 후 유기 하는 범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자보건법상 부녀의 신체건강을 보호한다는 의학적 측면과 악성 유전자를 방지한다는 무생물학적 측면 그리고 생계 유지상 낙태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견해로 우리나라 형법규정에도 이와 같이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낙태죄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당연하다고 본다.¹⁶⁾ 또한 낙태죄는 남성에 의하지 않고 범죄의 대부분이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혼모의 경우 낙태와 유기 경우가 더욱 많이 발생하여 대부분 암수범죄로 남아있는 실정이라 하겠다.¹⁷⁾ 이러한 낙태는 성생활을 천박하게 만들고 성생활을 성적쾌락주위로 가치를 격하시키는 동시에 혼인의 순결의식과 정조의식을 퇴화시켜 부부관계의 과경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에 관한 윤리를 문란케 한다. 더욱이 비행청소년들의 성적비행은 낙태가 용이하다는 현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3) 매춘, 성풍속과 여성범죄

전체범죄자중 여성범죄율은 남성범죄에 비하여 저조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매춘을 포함하면 남성의 전체범죄율을 초월할 만큼 여성범죄의 연구범위 중 중요

15)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1995, p. 240.

16) 황경희, 전계논문, p. 9.

17) 한휘전, 전계논문, pp. 30-31.

한 부분을 차지한다. 매춘은 여성의 절도와 함께 여성범죄의 주류를 이루는 유형이다. 매춘은 부녀가 댓가를 받거나 또는 받을 약속 하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교를 하는 범죄 행위로 그 자체가 비도덕적 행위이고 현행법 규정상의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방지는커녕 더욱 확산되고 그 방법 또한 다양화 추세에 있다.

이처럼 매춘이 확산되면 선량한 풍속이 문란해짐은 물론 성병의 전파, 가족관계의 파경, 사회의 도덕적 타락 등을 초래한다. 이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매춘이 성의식의 불건전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인신매매 등의 범죄적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도의감이나 죄의식에 의한 불감증상을 보이는 여성들의 의식변화가 보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며¹⁸⁾ 매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가출소녀들의 매춘행위와 직업윤락 여성이 아닌 여성의 윤락행위가 엄연한 현실이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출소년이나 소녀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향락산업이 계속 확산일로에 있고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정의 결손이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섹스산업에 대한 보도 등 윤락문화 접촉 기회의 다양한 양상에 따라 매춘에 대한 저항력 약화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주변에 산재해 있다. 또한 여성 스스로 대비 또는 매춘에 저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¹⁹⁾

여성의 성경험과 성의식은 여성비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성적체험을 어떤 환경과 나이에 가졌는가가 성의식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성의 혼란 속에서 성장하는 여성은 성경험 또는 성체험을 일찍이 수용하는 의식적인 변화를 수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소녀들의 비행의 학습장은 술과 성과 폭력이 수반되어 혼재되어 있는 변화가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변화가의 출입빈도에 따라 비행소녀들이 탄생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환경의 기능 부재 및 상실, 학교 교육 기능의 부재, 인터넷 등 성관련 또는 불건전한 정보의 범람 등도 매음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매음행위는 범

18) 강석산, 전계논문, p. 31.

19) 김미순,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p. 12.

죄이면서 다른 범죄와의 친화성을 갖는 범죄 조장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관심이 요구된다.²⁰⁾

4) 영아살해와 여성범죄

의도적으로 임신을 중절하는 것이 쉽게 행하여지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의식을 토대로 하여 보면 여성에 의한 영아살해 즉, 신생아 살해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 자녀는 출산 전 이미 본인의 의도에 따라 중절 수술을 하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의 경우 미혼여성의 영아살해의 형식과 기혼여성의 영아살해 등이 범해지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에 따른 결과를 주변 또는 사회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범행을 자행하며 임신 동기는 감정적, 충동적 행위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살해 동기는 윤리관 부재, 남자의 배신, 중절수술비용이 없는 경우 등이다. 과거 기혼여성은 가난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의 기혼여성은 혼외교재의 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유형의 영아살해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남성이 방치한다는 점과 가해여성의 저항력, 지적인 혼란결여로 인해 영아살해라는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결국 영아살해는 살해동기들이 분만으로 말미암은 흥분적 상태와 합치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3. 財産犯과 女性犯罪

재산범이란 타인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여성이 재산범죄에 관여가 큰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60~70년대의 절도죄가 상당부분 차지하던 비중이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경제 활동이 확대에 따라 경제적 요구에 기인한 사기죄의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여성범죄 중 재산범죄의 유형을 보면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20) 강석산, 전제논문, p. 32.

공갈죄, 강도죄 등을 의미하며 재산범 중에서 사기죄가 주된 여성범죄의 유형으로 등장한 배경은 여성범죄자 특성의 하나로 지적되는 협골성과 손쉽게 보다 큰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경제적 요구에 따른 의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사회는 배금주의의 해독에 오염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겠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팽배²¹⁾ 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각종 투기에 관여한 문제 등이 여성사기범들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어지고 있다. 이는 절도에 의한 소규모의 불법적 이득보다 사기에 의한 것이 훨씬 큰 재산상의 이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재산범의 특징은 결혼한 여성이 실질적으로 가계의 해당자로서 가계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절도나 사기 등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쉽게 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환경적인 여건의 지배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미혼여성들의 의식이 가치평가 기준으로 물질만능주의를 최고로 여기는 행태에 있어서 범죄행위는 물질중심의 가치평가에 기인한다고 본다.²²⁾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오히려 여성의 절도는 감소추세에 있다. 쇼핑과정에서 야기되는 절도는 여성절도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보면 이 사실은 성역할의 분담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이런 유형의 여성절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남녀간 성역할 분담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급증한 이혼과 독신주의와도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의 경우 조사에 의하면 소녀들의 절도 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① 초범자가 많다. ② 발각되기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연령 분포상 16세 전후가 가장 많다. ④ 하교하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에 집중한다. ⑤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때는 3월, 7월, 11월이었

21) 상계논문, p. 39.

22) 조옥순,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7, p. 21.

다. ⑥ 집단형태를 취한다. ⑦ 절취대상으로 의류, 화장품 등 외적인 필요 물품이다. ⑧ 절도장소는 점포, 슈퍼마켓, 백화점 등이다. ⑨ 절도의 경우는 부모 결손율은 다른 비행소녀보다 낮다. 일본과학경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범행 동기는 욕구 충족형, 체험형, 쾌락형 등이 높게 나타난다.²³⁾

여성의 절도는 한마디로 물질주의와 금전 만능주의적인 나쁜 측면이 도의적 관념을 타락시킨 결과이다. 여성범죄와 재산범죄의 관계에서 고찰해 보면 다른 여성범죄와 비교해 볼 때 심리적, 생물학적 환경에 더욱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4. 暴力犯과 女性犯罪

폭력범은 자연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및 의식구조가 급변하기 시작한 수년 이래, 여성범죄의 양적 증가와 함께 주목되어지고 있는 것이 질적인 변화로서 조폭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고정관념,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나약하고 온순하므로 폭력성은 남성만의 것이라는 기존 인식의 틀을 깨어버리는데 충분하며 최근에 자주 나타나는 보험금 목적 살인, 상해, 강도, 가정내의 폭력사건을 보아도 여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인지가 가능하다.

재산범죄가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폭력성 범죄가 80년대 중반 이후 난폭해지고 잔인해지며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이 폭력성 범죄와 관련함을 지적하고 있다.²⁴⁾ 이러한 폭력적 범죄 현황과 관련한 학자들이 제시하는 범죄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범죄는 여성특이의 생리적 작용과 관계하며 여성의 공격성을 뇌의 구조와 성호르몬과의 관계에 따라 여성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견해이고

23) 강석산, 전계논문, p. 38.

24) 조옥순, 전계논문, p. 21.

둘째, 여성의 폭력적 범죄현상을 여성의 성격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학자의 의견으로 특히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여성들에 있어 대인 관계의 범위와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 등이다.

그리고 여성특유의 생물학적 특성, 여성이라는 이유로 형성된 심리학적인 특성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또는 여성이 접근하고 생활하는 사회 환경의 특수성 등이 여성범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여성폭력 범죄의 동향

여성범죄 중 주종을 이루는 유형은 비폭력적인 재산범죄이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폭력성향이 개입에 의해 범해지는 범죄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남·여간 성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방화의 비율은 오히려 여성의 점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폭력 범죄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할지 모르나 여성자체의 범죄성향에서 본다면 여성의 조폭화 경향은 현대 여성범죄의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여성 폭력범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결혼한 부부간에도 여자의 폭력에 남자들이 매를 맞는 경험을 했다는 조사결과에서 보듯 여성의 폭력성은 증가 일로에 있다.²⁵⁾

2) 여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여성에 의한 폭력범죄의 발생원인을 밝히는 방법론적 접근은 여성의 신체성, 즉 생물학적, 생리학적 측면과 사회성이라는 두 방향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는 월경, 임신, 폐경과 같은 여성의 생리작용이나 복수와 원한같은 여성의 수동성, 감정성이 여성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후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성의 억압과 폭력범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향이다.²⁶⁾

25) 강석산, 전계논문, p. 40.

26) 상계논문, p. 41.

(1) 생물학적, 생리학적 측면에서 여성폭력범죄의 원인

여성의 여성범죄와의 관계는 과거부터 존재하여 왔는데 폭력성향을 갖는 생물학적·생리학적 요인으로 월경, 임신, 폐경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월경시에는 복통, 두통, 신경증상, 낙심, 식욕부진 등의 고통과 같은 자각증상을 갖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범죄와 관련하는 것으로 믿어 왔다. 이러한 현상이 범죄와 관련시 월경중에 있었느냐가 관대한 처분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월경 중이였는가의 유무조사는 자기 방어상 거짓말 진술의 가능성이 있다. 월경 등 성주기는 범죄나 비행의 유일한 근본원인은 아니지만 병적인 여성의 정신상태와 결합시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상여성의 경우 월경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임신, 폐경기 측면에서 여성 폭력 범죄의 원인

임신은 낙태죄나 영아살인죄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임신은 낙태나 영아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임신이 낙태에 관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월경의 폐기가 여성의 심리에 지대하게 영향하여 불안정, 불면증, 정신력 위축, 불안감, 우울증, 성적매력 급감, 성미 급함 등으로 이어져 폭력적 범죄로의 발전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여성폭력범죄의 특성

우리나라의 경우 폭력범죄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는 성별을 고려한 연구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여성의 폭력범죄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의 폭력범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폭력범죄의 특성을 몇 가지 요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폭력범죄는 남성에 비해 가족유대가 보다 많이 관련된다는 점이다.²⁷⁾ 이것은 여성의 폭력범죄에서 관계적 특성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폭력범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폭력범죄에 대한 논의²⁸⁾에서

27) Heimer, K, and S. D. Coster, "The Gendering of Violent Delinquency", *Criminology* 37(2), 1998, pp. 277-317.

28) Miller, J., "Up It UP : Gender And The Accomplishment Of Street Robbery", *Criminology* 36(1), 1998, pp. 37-66.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여성폭행의 상당수가 피해자의 유발에 의해 일어났다는 연구를 통해서도 시사 받을 수 있다.²⁹⁾ 셋째, 여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특성이 남성폭력범죄와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 내용으로 여성폭력범죄자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향이 크고, 범죄자와 알고 있는 사이가 많다는 점 등이다.

(1) 범행동기

성별에 관계없이 정서적 갈등으로 인한 폭력이 가장 많지만 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여성이 46.7%로 남성의 37.5%에 비해 많았다. 정서적 갈등에는 분노·좌절·보복 등이 해당되며 대부분은 분노에 해당된다.

정서적 갈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경우 여성은 질투의 경우 비율이 5.5%로 남성의 1.3%에 비해 많았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질투로 인한 폭력을 더 많이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질투심은 남성에 비해 폭력의 원인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로 여성살인범의 범행동기에서도 질투가 하나의 범행동기로 제시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여성의 폭력범죄에서는 질투가 남성에 비해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⁰⁾

(2) 범죄유발요인

기존의 논의에 의하면 여성폭력 범죄는 남성에 비해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여성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공격적 성향이 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범죄에 직접적 영향을 준 요인으로 욕설, 신체적 폭행, 폭력에 사용한 도구 등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욕설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해자가 남성과 여성이 공통적으로 먼저 욕설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폭행을 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먼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폭력에 사용한 도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93.4%, 여성의 경우 83.1%가 가해자 쪽에서 먼저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약 10% 낮게 나타났다.³¹⁾

29) I. Sommers, and D.R.Baskim, "The Situational Context of Violent Female Offending",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2), 1993, pp 136-162.

30) 전영실, "여성폭력범죄의 특성 및 대책", 「교정연구」 제22호, 한국교정학회, 2004, p. 156.

31) 상계논문, p. 157.

5. 藥物 및 알코올과 관련된 特徵

1) 藥物 남용과 여성범죄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편, 모르핀, 코데인, 코카인, 헤로인, 메타돈, 기타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적은 양으로도 진통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잊을 수 없는 도취를 체험하게 되므로 한번 잘못 사용하면 의존상태에 빠지게 되고 격렬한 금단증상이 일어나 이의 사용을 중지하기 어렵게 된다.³²⁾ 이러한 약물 관련 복용시 약리작용 및 남용의 결과 또는 효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약물의 종류 및 약리작용

마약류	종 류	약리작용	의약용도	투여방법	남용효과	작용시간	
마약	천연 마약	아 편	중추신경 억제	진정, 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 저항력 상실, 사망	3~6
		모 르 핀	"	"	"		
		헤 로 인	"	"	"		
	합성 마약	코 카 인	중추신경 흥분	국소마취	주사, 코흡입	흥분, 정신혼동, 사망	2
		메 사 돈	중추신경 억제	진정, 진통	경구, 주사	아편과 동일	12~24
		염 산 페 치 딘	"	"	주사	"	3~6
향정신성 물질	메 스 암 페 타 민 (히로뽕)	중추신경 각성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흡입	환시, 환청, 환촉, 피해망상, 사망	12~34	
	바 르 비 탈 류	중추신경 억제	진정, 수면	경구, 주사	취한 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등	1~6	
	베조디아 제 필 류	"	정신신경 안정	"	"	4~8	
	L S D	중추신경 흥분, 억제	없 음	"	환각, 환청, 환시	8~12	
대 마	대 마	"	없 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 환각	2~4	

자료 : 대검찰청, 「약물의 종류 및 약리작용」, 2003.

32) 신양균 ·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9, p. 134.

비합법적인 약물의 남용 경향은 선진국에 있어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시민에 까지 침투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약물의 남용은 개인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는 범사회적 행위이다. 약물남용은 망국의 근원이며 약물의 계속적인 복용은 수면부족, 식욕 감퇴, 환각, 망상 등 정신분열증과 같은 증상을 가져온다. 환각이나 망상이 강화되어지면 발작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³³⁾

약물작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는 적다. 그러나 정신병자나 정신병 징후를 가진 자가 복용시 특이한 환상 또는 환각으로 살상의 충동을 느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마약 자체는 복용자로 하여금 쾌감을 누리게 하고 대인관계를 단순화하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약물 복용시 점차 복용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양도 증가되어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지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며 중독 후 체내에서 약물기운이 없어짐에 따라 극히 불쾌한 신체적, 정신적 병증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더욱 더 사용을 그만두지 못한다. 약물구입이 용이하지 않게 되면 급기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물의 취득에 전념하게 되고 거짓말, 사기, 절도, 위조 등을 상습적으로 병행하게 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폭력적 행위까지 불사하기에 이른다.³⁴⁾

여성의 마약 또는 약물복용의 동기는 자신의 기능적 욕구에 의한 것 보다 불량한 주변 지인의 권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변의 지인은 남편이나 애인, 폭력단체 관계자, 환각제 상용자 등이다. 특히 이러한 약물복용의 여성들은 청소년 단계에서 비행을 경험한 경우가 많으며 생활전반에 걸쳐 대인관계가 나쁘다. 또 비행 경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는 친화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적응 능력이 저하되고, 비사회적이며 약물남용이 결국은 폭력단에 접근하는 계기가 된다.³⁵⁾

이러한 여성들의 특성을 보면 첫째, 여성의 성격 특성으로 약물남용의 여성은 명랑한 것으로 보이나 주체성이 결여되고 다른 사람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와 둘째,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으로 생활태도가 건전하지 못하며 약물복용

33) 강석산, 전계논문, p. 55.

34) 김미순, 전계논문, p. 15.

35) 강석산, 전계논문, p. 56.

여성의 주변 환경 역시 정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 남성편력, 실업 등 비정상적인 가족분위기에서 생활할수록 약물에 접하기 쉽다. 이러한 환경 및 성장과정, 성격적 특성에 따라 정상적인 과정과 인격을 이룬 여성에 비해 복용 동기를 쉽게 가지고 약물 남용으로 발전된다. 그리고 성인 여성의 생활주기에서 나타나는 중년위기가 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성격특성이나 비정상적 생활환경은 결국 마약류 남용과정으로 연결되어 가정파탄을 초래하고 가산을 탕진하여 결국 살인이나 절도 등의 범죄에 몰입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³⁶⁾

2) 알코올 중독과 여성범죄

알코올이 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촉진작용을 하는 경우란 행위자가 과음을 하게 되면 지적인 측면에서나 의지적인 측면에서 이상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³⁷⁾

급성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명정의 심리상태는 물론 주량 또는 음주자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음주의 결과로 인하여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극히 많은 것은 음주로 인하여 특이한 심리상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음주를 하면 일반적으로 주의가 산만하여지고 사고는 천박하여지며 자제력이 상실되고 기분은 발양하며 의사의 흥분은 높아지고 더욱이 피로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부적 행동이 용이하게 된다.³⁸⁾ 따라서 명정범죄는 의사의 흥분, 양진에 기한 순간적인 정동폭발로 일어나는 격정범죄, 의사분별을 상실하여 일어나는 충동성의 범죄를 특징으로 한다.

알코올로 인한 여성범죄는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생리적 훼손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36) 최윤수, “한국여성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관동대학교, 1998, p. 562.

37) 정영석·신양균, 전거서, p. 126.

38) 정신의학에서는 이러한 명정을 다시 그 중독증상의 정도에 따라 단순명정, 복합명정, 병적 명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심리적특징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적 명정은 정신질병자, 정신박약자, 간질환자 등이 여기에 빠지기 쉬우며 이상흥분, 건망증 등의 증상을 수반하게 된다.

첫째, 직접적으로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알코올로 인하여 본인 자신이 범죄를 행하는 경우로 최근 부쩍 늘어난 여성의 음주운전 사고 등 교통범죄를 들 수 있으며 교통범죄의 경우가 많아 여성의 알코올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³⁹⁾ 또한 지속적으로 알코올에 노출되어 중독에 이르렀을 때 자제력과 판단력의 결여, 감정의 결핍, 감정의 폭발 등 충동적인 형태의 여성의 직접 범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간접적으로 범죄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간의 불화, 사회구성원의 냉대, 자녀에 대한 훈육기회의 마비 등으로 발전된다. 이러한 알코올의 생리적 작용이 어떠한 알코올은 공격행동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모든 범죄 중 많은 부분이 주취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특히 폭력은 술에 의해 유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술에 의해 쉽게 행사된다는 견해도 있다.⁴⁰⁾

셋째, 음주가 음주자의 자손에 대하여 생물학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그 때문에 자손이 범죄를 행하는 경우이다.⁴¹⁾

(1) 알코올의 직접적 범죄 촉진작용

범죄의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경우란 행위자가 과음을 하게 되면 지적인 측면에서나 의지적인 측면에서 이상형태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명정상태의 범죄⁴²⁾ 중 가장 많은 것은 상해와 폭행이며 그 다음으로 강도·방화·협박 등을 들 수 있다.

음주를 하지 아니하면 온화하여 도저히 폭력적 범죄를 실행할 능력이 없는 자라도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원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다량의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명정 등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해·살인 등 폭력성 범죄를 저지르기

39) 박봉진, 전계논문, p. 395.

40) 조옥순, 전계논문, p. 31.

41) 정영석·신양균, 전계서, p.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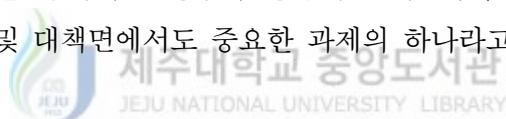
42) 명정상태의 범죄란 음주로 인한 매우 취한 상태의 범죄를 일컫는 것으로 명정범죄는 의사의 흥분, 순간적인 정동폭발로 일어나는 격정범죄, 의사분열을 상실하여 일어나는 충동성 범죄를 그 특징으로 한다.

쉽고 주의력 산만 등으로 인하여 과실성 범죄를 저지르기 쉽게 되는 것이다. 알코올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명정상태의 충동성에 의하여 자기통제력 상실상태에서 충동성·과실성 범죄에 쉽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2) 알코올의 간접적 범죄촉진작용

간접적으로 미치는 음주의 여향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음주자가 그 가족의 사회적 곤궁이며 특히 습관적인 음주자(알코올 중독상태)의 경우이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순간 충동에 의한 격정 범죄, 사려부족에 의한 충동적 범죄를 저지르기 쉬우므로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공격적 범죄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풍속범·옥외절도·부랑 등과 같은 사회적 패배자로서의 범죄군에도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대한 저항의 표시, 단순한 경험, 호기심, 이상적 인간관계에 의하여 음주를 하게 되는데 비행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알코올은 청소년의 범죄와의 관련성 및 대책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6. 社會構造의 變化와 女性犯罪

1) 산업화구조와 여성범죄

우리나라 사회적 구조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 및 계기로 경제적 규모의 확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경제 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춘 또 다른 경제 정책의 추진으로 사회구성의 다양화, 새로운 경제구조의 탄생, 정보화 사회로의 길목에서 다양한 정보의 범람, 새로운 패턴의 인력 필요 요구 등에 부응한 남녀 구분이 없는 사회로의 진출 및 활동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1970~1980년대를 거쳐 1990년도부터 21세기에 이르러 진보적이고 초고속화 된 산업화에 따라 여성범죄의 발생 요인도 다양한 접근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나 중용변수로 이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의 확대와 이에 따른 여성의 가정적, 사회적 위치 및 역할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의 패턴을 산업화 초기 경공업중심에서 중공업으로, 이를 또 발전시켜

정보화 산업형태로 산업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 및 개편이 자연적으로 새로운 인력의 참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가정내에서만 존재로 심리적, 경제적 만족을 할 수 없는 역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구조 및 통념에 의해 상당한 기간 동안 저지되어 있고 사회적 활동을 남성이 전유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진출은 종교적 신념처럼 금기시했던 시기를 지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치 분야, 사회분야, 문화 분야 등 각양 각층의 사회구조 전면 또는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구조상의 현실에서 볼 때 여성의 사회진출이 없었던 과거에 비하여, 여성의 범죄발생률 증가는 범죄적 기회와 구조적, 시간적 필연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여성의 사회진출 및 참여는 여성에 의한 도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나 사회의 참여에 따른 교류의 확대와 활동의 책임을 고려할 때 여성의 사회참여는 범죄의 발생률 증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2) 여성범죄와 도시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은 도시화, 산업화로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여성범죄의 증가는 직·간접적인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촌락 지역보다는 도시화지역에서의 범죄 발생률이 높고 도시에서는 도시중심부보다 도심 주변으로 갈수록 범죄율이 낮아지며 도시의 식민 지역에 범죄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지적이다.⁴³⁾ 도시는 사회 통제 구조의 기능약화와 범죄의 동기 유발요소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범죄가 도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이 없었다. 도시는 이질적인 구조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개성을 지닌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직업, 계층, 경제적 생활환경, 교육수준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활하다보면 규범과 가치의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이질성은 규범간, 행동양식 간의 갈등현상으로 나타나고 도시는 상호간의 무관심, 도시의 은닉성에 따라 범죄 후 도주, 은폐에 용이하며 무관심 및 은닉성은 통제의 어려움과 감시자적 역할 역시 둔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43) 강석산, 전계논문, p. 95

도시화는 가치관계를 물질중심의 사고와 행동으로 전환시켜 인명을 중시하지 않게 하고 경제적 불안정성, 교육기회의 탈락, 오락성의 증대, 도덕적 기준의 퇴색,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 등이 결국 범죄로의 유혹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여성범죄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화 추진의 결과로 산업구조의 개편을 필요로 하였고 노동의 참여 형태 및 구조 역시 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여성의 지위는 여성 자신의 의식 개선 등 여성운동을 기초로 하여 여성 범죄와의 관련성을 검증함이 필요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때문에 여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그 자격에 맞는 적절한 임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전문직, 관리직 진출은 오히려 여성범죄를 억제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의 노동구조가 가사를 직접 종사하면서 서비스업, 시간제 노동 등 업무에 진출하여 업무에 비하여 낮은 임금에서 일하는 경우 범죄의 유혹과 접촉하는 기회에 더 많이 노출한다.

우리나라의 노동구조 및 산업화의 구조로 볼 때 여성의 전문분야 진출은 20대에 이루어지나 결혼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 후 사회참여를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중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30세 이후 여성범죄의 증가는 노동구조의 다양화와 여성의 의식 및 인식의 전환에 따라 범죄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여성범죄와 가족제도

원래 가족제도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족제도 또한 가변적인 것이 명백하다. 오늘의 핵가족화 가족제도로의 정착은 사회 변동과 상상적 변동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대가족제도였음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철저한 가부장적 제도와 권리의 확립 아래서 친자중심, 남성우위의 차별적 가족관계에 기초한 남아선호사상, 남존여비사상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여 왔다. 이러한 가부장적 전통 가족제도는 차별적 원리로 가족의 구성요소인 성과 대의 양측면의 인간관계에 작용하여 왔으며 유교 문화의 융성과 더불어

계승되어 왔다. 여성은 남성에 속해 있는, 남성에 대한 예속적 지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가족제도가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의 출현과 산업구조의 개편에 의한 산업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의한 자각과 종교적인 영향, 교육적인 영향 등에 의하여 붕괴되었고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화는 남녀평등 원리에 입각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였다.⁴⁴⁾

사회구조의 변화는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났으며 결국 가족제도의 구조를 핵가족화의 형태로 변화시켰고 또한 가정내의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도 종속적인 형태에서 개방적 사고와 진보한 가족 구조로의 변환에 영향을 주었다. 기존의 가족제도가 가부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형태이었다면 최근에는 수평적인 구조의 형성과 더불어 쌍방의 협조를 강조하는 근대적 가치관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핵가족화 제도의 문제가 여성의 비행이나 여성범죄 발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시 할 수 있으나 가정구조의 개방과 여성의 대사회 접촉 기회의 증가로 이어져 대담하고, 개방적인 모델로의 새로운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대가족제도시 유지되어 온 가족의 감시적 기능의 약화 내지는 실종으로 여성들이 새로운 방종의 문화에 오염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증가하였다. 또한 이런 형태의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이 외출의 비통제, 이성과의 불륜, 춤 등을 간섭 없이 접촉할 수 있어 결국은 폭력적 형태의 여성범죄로 발전이 빈번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기혼녀가 이혼녀보다 여성범죄 범죄율이 높으며 이러한 통계상의 수치가 결국 가족제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고 범죄 발생의 변수적 요소로 아주 깊게 작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환경의 결손형태, 즉 결손가정, 빈곤가정, 부도덕 형태의 가정, 갈등구조의 가정, 시설가정 등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가정구조의 붕괴 또는 결함은 특히 청소년의 가출 및 범죄조직으로의 유입 등 청소년범죄의 촉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정의 구조 및 형태 그리고 운영자에 따라 가족제도와 관계하여 청소년에 영향을 주므로 가정의 건전화가 곧 범죄로의 예방의 첫걸음이라 하겠다.

44) 상계논문, p. 93.

第3章 우리나라 女性犯罪의 動向

第1節 우리나라 女性犯罪의 發生 現況

전 세계적으로 사회구조의 산업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여성범죄의 추세 또한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공히 증가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와 후진국가보다 선진화된 문명의 국가에서 오히려 여성범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약 15% 내외를 차지하는 여성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재산범죄, 죄명별로는 사기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1세 이상에서 50세 이하,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 생활환경별로는 하류계층의 기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⁴⁵⁾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서양문물의 도입, 여성의 사회진출 및 역할 확대, 산업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붕괴 등이 초래되었다. 결국 이러한 변화와 사회적 요구속에서 여성의 삶의 형태와 아울러 질적인 면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여성이 범죄로의 접촉 기회를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범죄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참여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또한 확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보다 건전화함으로써 여성의 범죄로의 유입 또는 유혹에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노력이 필요하다.

1. 概 觀

우리나라 여성범죄자의 양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성범죄자와의 추이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 범죄자 중 남성범죄자수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여성범죄

4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3, p. 128.

죄자 수를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약 50%가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여성의 범죄자 수는 남성에 비하여 양적인 면에서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표 3> 우리나라 인구현황

단위 : 명

연 도 \ 구 분	전체인구	남성인구	여성인구	여성비(%)
1993	45,001,113	22,602,933	22,398,180	49.77
1994	45,416,339	22,814,974	22,601,365	49.76
1995	45,858,029	23,041,367	23,023,549	49.75
1996	46,266,256	23,041,367	23,238,596	49.76
1997	46,684,069	23,445,473	23,238,596	49.77
1998	46,991,171	23,594,034	23,397,137	49.79
1999	47,335,678	23,764,463	23,571,215	49.79
2000	47,732,558	23,962,088	23,770,470	49.79
2001	48,021,543	24,102,463	23,919,080	49.80
2002	48,229,948	24,200,192	24,029,756	49.82

주 : 여성비는 (여성인구/전체인구×100)

자료 : 통계청, 「우리나라인구현황」, 1994-2003.

<표 4>를 통해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10년 동안 여성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남성범죄 증가율에 비하여 여성범죄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에 207,707명이었던 여성범죄자 수가 2002년에는 342,338명으로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약 164%로서 남성범죄의 10년간 증가율 약 110%에 비하여 상당히 급격한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8년에 급격한 여성범죄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음은 1997년말 IMF의 영향으로 실업, 경제구조의 혼란, 가정경제의 악화, 경기불안 등 사회발전에 걸친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의 문제와 연관되어 범죄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성범죄는 여성범죄의 폭발적 증가를 보인 1998년보다 2년 뒤인 2000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임으로써 여성이 사회적 위기에 먼저 반응하여 사회적 환경변화에 남성보다 더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전체 범죄자수 중 여성범죄자 수의 비율이 미미한 상황이지만 꾸준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여성범죄자가 중요한 범죄현상으로 예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성별 전체범죄자수 분포

단위 : 명(%)

연도	범죄자수	여 성		
		남 성	범죄자수	여성비(%)
1993	1,531,245 (100)	207,707 (100)	11.9	9.5
1994	1,437,929 (93.90)	224,118 (107.90)	13.5	10.2
1995	1,548,770 (107.70)	255,635 (114.06)	14.2	11.5
1996	1,634,349 (105.52)	288,200 (112.73)	15	12.8
1997	1,708,247 (104.52)	278,007 (96.46)	14.0	12.2
1998	1,857,461 (108.73)	339,104 (121.97)	15.4	14.7
1999	1,943,136 (104.61)	363,688 (107.24)	15.8	15.7
2000	2,241,653 (115.36)	328,126 (90.22)	14.6	13.9
2001	1,641,225 (73.21)	344,755 (105.06)	17.3	14.4
2002	1,954,692 (119.09)	342,338 (99.29)	14.90	14.3

- 주 : 1. 여성비는 (여성/(남성+여성)×100)
 2. 인구비는 여성인구 1,000명당 범죄자수
 3.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4-2003.

또한 <표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전체 여성범죄 중 2001년까지는 특별법범이 형법범에 비하여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형법범은 어느 정도 일정 형태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특별법범은 1997년 157,400명에서 1998년에는 196,093명으로 124%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며 전체범죄자 수 증가추세 분석과 같이 국가적 경제 위기가 개인적인 경제활동에 무관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형법범이 123,177명, 특별법범이 221,578명으로 전체 여성범죄자 중 특별법범이 64.27%로 형법범 35.27%보다 28.55%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이와 반대로 전체 여성범죄자 342,338명 중 형법범이 181,124명으로 52.9%, 특별법범이 161,214명으로 47.10%의 분포를 보여 2001년 이전과 다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2년도 이전에는 특별법범에 포함되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이 2002년부터 형법범으로 분류되어 2002년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자 53,894명이 포함된 결과이다.

여성의 범죄율이 남성범죄율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남성에 비하여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어 범죄기회 및 공간접촉이 적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성의 범죄에 대한 관대함 또는 자비심, 동정에서 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통계상의 여성범죄 수치보다 전체범죄 현황 중에서 여성범죄가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일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표 5> 여성범죄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전체 여성범죄자수	형 법 범	특별법범	비 고
1993	207,707 (100)	80,736 (38.88)	126,971 (61.12)	
1994	224,118 (100)	90,365 (40.32)	133,753 (59.68)	
1995	255,635 (100)	114,015 (44.60)	141,620 (55.40)	
1996	288,200 (100)	134,883 (46.80)	153,317 (53.20)	
1997	278,007 (100)	120,607 (43.38)	157,400 (56.62)	
1998	339,104 (100)	143,011 (42.18)	196,093 (52.82)	
1999	363,688 (100)	151,277 (41.60)	212,411 (58.40)	
2000	328,126 (100)	122,459 (37.33)	205,667 (62.67)	
2001	344,755 (100)	123,177 (35.73)	221,578 (64.27)	
2002	342,338 (100)	181,124 (52.90)	161,214 (47.1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4-2003.

2. 女性犯罪者の 罪質別 犯罪者數 分布

최근 10년간 여성형법범의 죄질별 범죄자 분포 현황은 <표 6>과 같다. 여성범죄자 중 형법범은 1993년 80,736명에서 2002년에는 181,124명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224%의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형법사범 중 가장 두드러진 증가추이를 보이는 죄질은 재산범죄로 1993년 48,624명에서 2002년에는 84,460명으로 173% 증가하였고 위조범죄도 1993년에 1,893명이던 범죄자 수가 2002년에는 3,969명으로 약 209%의 증가하였으며 여성범죄의 죄질별 범죄자수 현황 중 특히 강력범죄는 1993년 7,229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66,776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923%의 엄청난 증가를 하였다. 여성폭력범죄 중 강력범죄가 2002년에 특별하게 증가한 원인으로 2002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범죄자수를 통계 및 분류상 특별법범에서 형법범으로 분류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남성범죄 형태 및 죄질 못지 않게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여성범죄도 힘을 필요로 하는 범죄 형태로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 중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의 흉악범죄가 1993년 457명에서 2002년에는 503명으로 흉악범죄의 증가율은 약간의 증가세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죄질별 범죄자 분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 95명이었던 공무원 범죄가 1999년 549명으로 전년대비 577%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특이한 현상으로 1997년말 경제위기의 여파가 1999년의 공무원 범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형법범의 총범죄자 수 181,124명 중 재산범죄가 46.6%인 84,460명이고 강력범죄가 36.86%로 66,776명이며 위조범죄는 2.19%인 3,969명으로 세 가지 죄질별 인원이 특히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여성전체 범죄자수 증가 현황에서 형법범은 244% 증가하였으나 특별법범은 126%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여성사범 중 형법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을 기준하여 볼 때 약 53%를 차지하고 그 중 재산범, 강력범, 위조범이 형법사범의 주류를 차

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범죄자의 증가추세 속에 죄질별 인원수는 매년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산범죄의 경우 1993년 60.22% 점유율을 보였으며 2002년에 46.63%를 보임으로서 전체 여성 형법범의 절반이 재산형 범죄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여성형법범의 죄질별 범죄자수 분포

단위 : 명(%)

연도\죄질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계
1993	48,624 (60.22)	7,229 (8.95)	1,893 (2.34)	238 (0.29)	16,150 (20.00)	635 (0.78)	6,005 (7.42)	80,736 (100)
1994	58,151 (64.35)	8,259 (9.13)	2,362 (2.62)	68 (0.08)	14,083 (15.59)	713 (0.79)	6,797 (7.44)	90,365 (100)
1995	81,097 (71.13)	8,345 (7.32)	2,605 (2.29)	81 (0.07)	13,638 (11.96)	742 (0.65)	7,507 (6.58)	114,015 (100)
1996	101,171 (75.00)	8,820 (6.54)	3,138 (2.33)	58 (0.04)	13,122 (9.73)	690 (0.51)	7,884 (5.85)	134,883 (100)
1997	88,401 (73.30)	8,397 (6.96)	3,210 (2.66)	64 (0.05)	11,978 (9.94)	666 (0.55)	7,891 (6.54)	120,607 (100)
1998	107,959 (75.49)	10,037 (7.02)	3,635 (2.54)	95 (0.07)	12,517 (8.75)	575 (0.40)	8,193 (5.73)	143,011 (100)
1999	107,613 (71.14)	12,568 (8.30)	4,555 (3.01)	549 (0.36)	13,976 (9.23)	727 (0.48)	11,838 (7.82)	151,277 (100)
2000	78,027 (63.71)	13,313 (11.39)	4,021 (3.28)	171 (0.14)	14,827 (12.11)	784 (0.64)	10,679 (8.72)	122,459 (100)
2001	77,515 (62.92)	14,241 (11.56)	3,985 (3.24)	114 (0.09)	15,588 (12.66)	774 (0.63)	10,960 (8.90)	123,177 (100)
2002	84,460 (46.63)	66,776 (36.87)	3,969 (2.19)	90 (0.05)	14,587 (8.05)	744 (0.41)	10,498 (5.80)	181,124 (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3-2003.

3. 女性犯罪者の 罪名別 犯罪者數 分布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범죄자의 죄질별 분포현황은 <표 7>과 같다. 여성범죄자의 죄명별 분포를 분석하여 보면 최근 10년간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낸 죄명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사범으로 1993년 576명이었으나 199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 1812명으로 1993년 보다 319%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후 1997년 말부터 경제의 혼란과 함께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 2002년까지 1993년 대비 1,088%라는 경이적인 증가를 나타낸다. 또한 최근 10년간 폭행범죄가 약 318%, 문서위조범죄가 2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가 약 190%, 사기죄가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두드러진 범주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이나 폭행, 문서 위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과거에 비하여 여성범죄가 남성범죄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점차 고학력시대에 접어들면서 화이트칼라 범죄형의 문서위조, 사기 등의 범죄도 다른 범죄유형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죄명보다 간통과 배임죄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은 범죄증가 현황에서 보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절도범, 상해사범, 도박과 복표사범은 약간의 증가추이만 나타내고 있다. 사기죄와 배임죄의 경우 1998년과 1999년에 특별히 증가하였다가 2000년도에 이르러 다소 진정된 통계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반에 드리웠던 경제의 어두운 현실이 2000년도에 이르러 온 국민의 결집된 노력으로 경제가 다소 안정적 운영에 이르자 경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 유형인 사기죄와 배임죄의 범죄자수가 1997년 수준으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여성범죄의 죄명별 범죄자수 분포

단위 : 명

구분 연도	절도	사기	배임	폭행	상해	문서 위조	간통	도박과 복표	윤락행위 위반 등	폭력행위 위반 등
1993	5,118	37,025	1,660	1,174	5,237	1,629	7,422	8,636	576	28,415
1994	4,475	47,000	1,720	1,602	6,042	2,028	7,675	6,345	479	30,628
1995	4,496	68,994	1,838	1,569	6,102	2,216	7,301	6,211	490	32,634
1996	4,242	88,749	2,151	1,650	6,459	2,665	7,113	5,853	1,062	35,537
1997	4,213	77,276	1,760	1,655	5,967	2,795	5,772	6,008	1,812	35,919
1998	5,521	94,439	2,251	2,188	7,015	3,184	6,021	6,412	2,270	40,964
1999	6,430	90,801	2,649	3,424	8,875	4,083	6,016	7,859	3,463	55,524
2000	7,075	64,353	1,534	4,130	8,790	3,664	5,578	9,166	4,363	59,591
2001	7,405	64,078	1,155	4,169	8,771	3,692	5,344	10,148	6,246	61,780
2002	8,627	70,084	1,065	3,739	7,920	3,728	4,682	9,811	6,169	53,894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4-2003.



第 2 節 女性犯罪者の 環境 및 發生原因別 現況

1. 年齡別 女性犯罪者 分布

인간이 태어나서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정 또는 인격의 형성과정까지의 개인적인 발달과정에서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성장 단계에서의 환경적 요소 즉, 가정환경, 교육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인격체로 태어나게 된다. 연령은 여성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심리학적 면과 사회적인 발달의 특성을 통하여 활동하게 되고 각각의 연령층마다 심리적, 사회적 조건 및 사회 환경적인 경험의 면에서 상당한 개인차가 있게 마련이고 이에 따른 범죄성과의 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연령층마다 범죄의 유형 또한 다르다 할 수 있다.

범죄는 형성된 인격의 표현이고 그 인격은 소질과 환경에 의해 사춘기에 이

를 때까지 연령별 단계에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사춘기는 원인성 성향의 형성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인생의 포기 시기라는 자아확인시기로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 속에서 물건질취 비행 또는 성적인 새로운 경험 내지 성적인 충동에 의한 성범죄적 유형이 가장 많다. 20세 이상의 청년층이 주로 범하는 죄종은 사기, 횡령 등으로 특정 지을 수 있으며 동시에 체력과 성적에너지와 관련한 강력범이 증가한다.⁴⁶⁾

사물에 관한 사리판단이나 행동에 대한 결정도 연령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되고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욕망의 대상과 범위와 방법도 상당한 연령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여성범죄자의 연령 분포상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30~40대인 것은 <표 8>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인구증가억제책으로 추진되었던 산아제한의 영향으로 시간적 여유와 갭년기에 접어드는 여성의 특수한 생리적, 심리적인 현상이 탈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제도의 변화로 소수가족의 구성은 여성이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고 이를 건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관능적, 쾌락적, 비도덕적 현상과 친근하는 결과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19세 이하의 여성범죄를 보면 1993년 6,340명이 있었으나 2000년에는 18,518명으로 292%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청소년 여성범죄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19세 이하의 여성이 현저히 사회적 활동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적 환경이 지배했던 1990년대 초보다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기에 이르러 다양한 환경에 의해 활동하고 다양한 정보의 범람에 대한 환경적응 과정에서 범죄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0대 여성범죄의 경우에도 1993년 51,194명에서 2002년에는 97,514명으로 약 190%의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대비 1998년에는 129%로 증가하였다. 41세부터 50세까지의 여성범죄가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여성범죄자 중 약 28%를 차지하여 가정경제에 책임이 있는 40대의 여성도 사회적 경제구조의 혼란과 급속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이 결국

46) 강석산, 전계논문, p. 69.

범죄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2002년을 기준하여 볼 때 20대가 75,205명, 30대가 93,321명, 40대가 97,514명으로 20대부터 범죄로 접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이가 들수록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여성범죄자 중 활동이 왕성한 20~40대 여성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는 266,040명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토대로 하여 볼 때 19세 이하 또는 25세 미만과 40대에서 특이한 증가추세를 보여 젊은층의 의식변화가 요구되며 40대 이후의 여성 또한 시간적인 삶의 여유가 건전화할 수 있는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8>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연령별 연도	19세 이하	20~ 25세	26~ 30세	31~ 35세	36~ 40세	41~ 50세	51~ 60세	61세 이상	미 상	계
1993	6,340 (3.05)	18,509 (8.91)	24,755 (11.92)	40,178 (19.34)	41,753 (20.10)	51,194 (24.65)	19,312 (9.30)	5,666 (2.73)		207,707 (100)
1994	7,014 (3.13)	21,359 (9.54)	25,181 (11.24)	42,539 (18.98)	45,639 (20.36)	53,111 (23.69)	19,541 (8.72)	5,366 (2.39)	4,368 (1.95)	224,118 (100)
1995	8,954 (3.50)	25,341 (9.91)	28,851 (11.29)	45,513 (17.80)	52,234 (20.43)	60,506 (23.67)	22,168 (8.68)	5,898 (2.31)	6,170 (2.41)	255,635 (100)
1996	11,432 (3.96)	28,662 (9.95)	30,465 (10.58)	46,565 (16.15)	57,469 (19.95)	67,812 (23.52)	23,358 (8.11)	6,307 (2.19)	16,130 (5.59)	288,200 (100)
1997	12,653 (4.55)	25,109 (9.04)	27,952 (10.05)	38,682 (13.92)	53,092 (19.09)	65,738 (23.64)	21,608 (7.78)	5,965 (2.15)	27,208 (9.78)	278,007 (100)
1998	15,068 (4.44)	30,286 (8.94)	33,587 (9.90)	44,999 (13.27)	65,340 (19.26)	85,120 (25.11)	27,281 (8.05)	7,462 (2.20)	29,961 (8.83)	339,104 (100)
1999	13,573 (6.39)	17,261 (8.13)	19,938 (9.38)	28,387 (13.37)	42,392 (19.96)	59,450 (27.98)	17,411 (8.20)	5,086 (2.39)	8,913 (4.20)	212,411 (100)
2000	18,487 (5.63)	29,409 (8.97)	30,037 (9.16)	40,472 (12.34)	57,692 (17.58)	90,418 (27.56)	30,546 (9.31)	9,540 (2.90)	21,525 (6.55)	328,126 (100)
2001	20,448 (5.93)	36,259 (10.52)	32,581 (9.45)	41,312 (11.98)	56,572 (16.41)	96,732 (28.06)	31,181 (9.04)	9,699 (2.81)	19,971 (5.80)	344,755 (100)
2002	18,518 (5.41)	41,673 (12.17)	33,532 (9.80)	41,788 (12.21)	51,533 (15.05)	97,514 (28.48)	30,532 (8.92)	10,053 (2.94)	17,195 (5.02)	342,338 (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4-2003.

2. 教育程度別 女性犯罪者 分布

교육은 인간의 동물적 속성을 인간으로 형성하는 노력으로 표현된다.⁴⁷⁾ 뿐만 아니라 교육은 사람으로 어떠한 직업을 갖게 할 것이며 또한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여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그가 어느 정도 통합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⁴⁸⁾

교육은 사람을 논리화한다는 의견과 현대교육의 양상이 기술적이나 편합성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실현감각을 토대로 학교교육이 오히려 비행이나 범죄로의 촉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교육의 형태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들은 그 자체의 의미일 뿐 범죄의 통계적 수치 외에 그 어떤 근거로도 신뢰할 수 없으며 우리사회가 여성 고학력의 사회가 아니었으나 실제로 고학력층으로의 전환은 현대 범죄 양상에 접근하는 기능적, 전문적 범죄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학교 외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인정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교육의 본질 그 자체는 윤리적, 도덕적 인간형성에 있지만 그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⁴⁹⁾ 따라서 통계표상의 여성범죄자의 학력보다는 범죄를 범한 여성범죄자의 개인적인 상황과악 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교육정도별 분포현황을 <표 9>에서 살펴보면, 전체 여성범죄 중 약 42%인 142,965명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학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자 증가율보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10년간 증가율이 무려 285%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에 비해 고학력자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도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학력자의 범죄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이고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는 추세로 고학력자는 사회의 환경내에 배속되어 범죄의 배척기회가 많고 활동영역의 확대 및 경제활동의 활성화, 복잡한 인간관계 등 범죄의 여건으로의 노출이

47) 한가연, 「교육원리」, 박영사, 1983, p. 30.

48) 신석균, “한국여성범죄에 관한 사회적인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6, p. 30.

49) 김미순, 전계논문, pp. 30-31.

많으며 특히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하여 화이트칼라 범죄형태로의 증가를 암시한다 하겠다. 저학력의 범 죄는 기본적인 가정환경의 빈곤, 사회생활의 적응에 관계한 지식의 부족, 미경험 및 기술습득의 기회가 없어 취업 등의 기회 등에 제약으로 반논리적 행위의 범 법자가 많다.

결론적으로 여성범죄는 본질적으로 소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점차 고학력으로서의 사회 발전이 곧 고학력자 범죄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정도별 분포의 분석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표 9> 여성범죄자의 교육정도별 분포

단위 : 명(%)

학력 연도	무 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 상	기 타	미 상	계
1993	12,904 (6.21)	43,148 (20.77)	37,441 (18.03)	66,253 (31.90)	15,457 (7.44)	55 (0.03)	32,449 (15.62)	207,707 (100)
1994	10,827 (4.83)	39,192 (17.49)	37,749 (16.84)	72,821 (32.49)	16,588 (7.40)	940 (0.42)	46,001 (20.53)	224,118 (100)
1995	10,404 (4.07)	39,642 (15.51)	40,976 (16.03)	85,713 (33.53)	19,268 (7.54)	1,848 (0.72)	57,784 (22.60)	255,635 (100)
1996	10,146 (3.52)	42,031 (14.58)	45,685 (15.85)	98,696 (34.25)	22,642 (7.86)	2,952 (1.02)	66,048 (22.92)	288,200 (100)
1997	9,679 (3.48)	39,963 (14.37)	44,119 (15.87)	98,870 (35.56)	23,662 (8.51)	2,780 (1.00)	58,934 (21.20)	278,007 (100)
1998	11,238 (3.31)	48,946 (14.43)	54,459 (16.06)	120,478 (35.53)	29,648 (8.75)	2,636 (0.78)	71,699 (21.14)	339,104 (100)
1999	13,102 (3.60)	53,358 (14.67)	60,126 (16.53)	138,240 (38.01)	34,313 (9.44)	3,214 (0.88)	61,335 (16.87)	363,688 (100)
2000	12,235 (3.73)	47,260 (14.40)	55,127 (16.80)	130,232 (39.69)	34,597 (10.54)	3,376 (1.03)	45,299 (13.81)	328,126 (100)
2001	11,462 (3.33)	46,064 (13.36)	56,355 (16.35)	138,966 (40.30)	41,497 (12.04)	2,663 (0.77)	47,748 (13.85)	344,755 (100)
2002	10,296 (3.01)	42,401 (12.39)	53,500 (15.63)	142,965 (41.76)	44,095 (12.88)	3,007 (0.88)	46,074 (13.45)	342,338 (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4-2003.

3. 生活環境 및 結婚 有無別 女性犯罪者 分布

우리나라 여성범죄자 수는 남성범죄자 대비 약 20% 정도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범죄자의 생활환경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여성범죄는 하류계층에 의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총 여성범죄자 207,707명중 하류계층이 160,897명으로 77.46%를 차지하였고 2002년을 볼 때 여성범죄가 342,338명중 하류계층이 60%인 206,012명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에 관한 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 중 하나는 그들의 대다수가 빈곤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빈곤은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이 못되더라도 직접·간접적으로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⁵⁰⁾ 하류계층에서 여성범죄자가 집중한다 하여 여성의 빈곤은 범죄라는 등식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⁵¹⁾ 다만 통계수치 분석상 여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하류계층에 높다는 것은 곤궁심에 의한 범죄유발, 빈곤에 따른 환경의 불량화 등이 직·간접적으로 범죄와의 관계에서 변수로 작용한다는 가능성에 기초한 판단으로 생각하면 된다.⁵²⁾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전체 인구수 중 하류층의 비율에 대한 객관적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통계에 나타난 범죄자 수와 비율만 기준하여 하류계층이 범죄율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⁵³⁾ 그리고 최근 들어 하류계층의 범죄가 1993년 43,900명에서 2002년 95,650명으로 약 217%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생활의 여유에서 오는 범죄 즉, 도박, 부동산투기 등으로 인한 재산범죄의 증가에서 오는 것으로 과거와 같이 생활의 기본적 여건 유지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한 상대성 범죄의 증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범죄자 비율이 작은 상류계층의 범죄는 범죄자 수 및

50) 김수길, “한국여성범죄 현황과 그 예방책”, 「논문집」 제14호, 제주대학교, 1982, pp. 95-96.

51) 김미순, 전계논문, p. 32.

52) 상계논문, p. 32.

53) 노연호, “우리나라 여성범죄에 관한 일고찰”, 「녹우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1986, p. 68.

범죄발생 건수는 미약하나 범죄의 질이나 행태에 있어서는 하류계층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화이트칼라형 범죄 등 유형을 달리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여성범죄자의 생활환경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연도	상류계층	중류계층	하류계층	미 상	계
1993	2,910 (1.40)	43,900 (21.14)	160,897 (77.46)		207,707 (100)
1994	3,151 (1.40)	52,256 (23.32)	131,257 (58.57)	37,454 (16.71)	224,118 (100)
1995	3,421 (1.33)	60,177 (23.54)	142,072 (55.58)	49,965 (19.55)	255,635 (100)
1996	3,123 (1.08)	69,216 (24.02)	157,782 (54.75)	58,079 (20.15)	288,200 (100)
1997	3,155 (1.13)	69,596 (25.04)	154,890 (55.71)	50,366 (18.12)	278,007 (100)
1998	2,993 (0.88)	81,075 (23.91)	197,080 (58.12)	57,956 (17.09)	339,104 (100)
1999	3,167 (0.87)	88,459 (24.32)	222,024 (61.05)	50,038 (13.76)	363,688 (100)
2000	3,273 (1.00)	89,213 (27.19)	197,187 (60.09)	38,453 (11.72)	328,126 (100)
2001	3,313 (0.96)	95,907 (27.82)	207,427 (60.17)	38,108 (11.05)	344,755 (100)
2002	3,241 (0.95)	95,660 (27.94)	206,021 (60.18)	37,416 (10.93)	342,338 (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4-2003.

여성범죄자를 결혼 유무와 관련하여 <표 11>에서 분석하여 볼 때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가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여성범죄자 342,338명 중 기혼자가 즉, 배우자가 있는 여성범죄자수가 169,378명으로 약 50%을 차지한다.

결혼 후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혼생활이 원활하지 못한 여성들이 범죄의 증가에 기여함을 의미하며 가정의 결손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여성범죄자의 결혼유무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연도	미 혼	유배우자	이 혼	사 별	동 거	미 상	계
1993	39,257 (19.23)	139,210 (68.18)	12,946 (6.34)	12,777 (6.25)			204,190 (100)
1994	35,181 (15.72)	120,346 (53.77)	14,519 (6.49)	13,460 (6.01)	2,550 (1.14)	37,760 (16.87)	223,816 (100)
1995	40,149 (15.71)	130,957 (51.23)	16,253 (6.36)	14,024 (5.48)	2,741 (1.07)	51,511 (20.15)	255,635 (100)
1996	47,703 (16.55)	143,854 (49.91)	18,981 (6.59)	14,341 (4.98)	2,666 (0.93)	60,655 (21.04)	288,200 (100)
1997	48,375 (17.40)	142,001 (51.08)	19,596 (7.05)	13,230 (4.76)	2,907 (1.05)	51,898 (18.66)	278,007 (100)
1998	59,829 (17.64)	174,617 (51.49)	25,980 (7.66)	15,692 (4.63)	4,303 (1.27)	58,683 (17.31)	339,104 (100)
1999	68,352 (18.79)	191,672 (52.70)	30,607 (8.42)	17,919 (4.93)	4,739 (1.30)	50,399 (13.86)	363,688 (100)
2000	67,549 (20.59)	170,230 (51.88)	30,354 (9.25)	16,625 (5.07)	4,461 (1.36)	38,907 (11.85)	328,126 (100)
2001	77,445 (22.46)	175,031 (50.77)	32,977 (9.57)	15,841 (4.59)	4,970 (1.44)	38,491 (11.17)	344,755 (100)
2002	81,685 (23.86)	169,378 (49.48)	33,618 (9.82)	14,686 (4.29)	5,310 (1.55)	37,661 (11.00)	342,338 (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4-2003.

여성범죄자 중 미혼여성 범죄자의 부모관계별 분포는 <표 12>와 같다. 전체 비율상 부모가 다 있는 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는 편부모의 환경인 경우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의 11.62%이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약 9%를 차지하여 부모가 모두 안 계시거나 또는 어머니는 있으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 여성범죄의 기회가 많이 접촉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 유무관계가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고 가치관 판단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실(양)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나 실질적인 가족 구성 또는 가족 내부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가 가족내에서의 역할과 행동에 따라 자녀들이 건전한 사고와 판단, 그리고 인격형성에 깊이 관계함을 알 수 있다.

<표 12> 미혼여성 범죄자 부모 관계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연도	미상	실(양) 부모	계부모	실부 계모	실부 무모	실모 계부	실모 무부	계부 무모	계모 무부	무부모	계
1994	246 (0.70)	24,269 (68.98)	118 (0.34)	271 (0.77)	1,280 (3.64)	201 (0.57)	4,890 (13.90)	27 (0.08)	41 (0.12)	3,838 (10.90)	35,181 (100)
1995	188 (0.47)	27,749 (69.12)	168 (0.42)	296 (0.74)	1,508 (3.76)	206 (0.51)	5,853 (14.58)	34 (0.08)	192 (0.47)	3,955 (9.85)	40,149 (100)
1996	268 (0.56)	33,192 (69.58)	147 (0.31)	313 (0.66)	1,777 (3.73)	235 (0.49)	6,614 (13.86)	31 (0.06)	1,187 (2.49)	3,939 (8.26)	47,703 (100)
1997	237 (0.49)	34,628 (71.58)	110 (0.23)	341 (0.70)	1,799 (3.72)	220 (0.45)	6,350 (13.13)	32 (0.07)	243 (0.50)	4,415 (9.13)	48,375 (100)
1998	270 (0.45)	41,784 (69.84)	162 (0.27)	434 (0.73)	2,481 (4.15)	291 (0.49)	8,102 (13.54)	32 (0.05)	127 (0.21)	6,146 (10.27)	59,829 (100)
1999	178 (0.26)	47,568 (69.59)	232 (0.34)	483 (0.71)	2,985 (4.37)	313 (0.46)	9,130 (13.36)	37 (0.05)	221 (0.32)	7,205 (10.54)	68,352 (100)
2000	145 (0.22)	48,277 (71.47)	193 (0.29)	496 (0.73)	2,988 (4.42)	331 (0.49)	8,226 (12.18)	33 (0.05)	90 (0.13)	6,770 (10.02)	67,549 (100)
2001	214 (0.28)	56,049 (72.37)	190 (0.25)	564 (0.73)	3,374 (4.36)	371 (0.48)	9,314 (12.02)	34 (0.04)	48 (0.06)	7,287 (9.41)	77,445 (100)
2002	207 (0.25)	60,259 (73.77)	146 (0.18)	516 (0.63)	3,222 (3.94)	399 (0.49)	9,499 (11.63)	27 (0.03)	45 (0.06)	7,365 (9.02)	81,685 (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2003.

4. 女性犯罪者の 共犯關係別 分布

여성범죄자의 공범관계별 분포는 <표 13>과 같다. 전체 범죄자 중 단독범이 전체 범죄의 61~64% 정도로 압도적으로 차지하나 공범관계를 형성한 범죄에 있어서는 친인척이 약 4.5%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 직장 동료, 동네친구, 고향친구 등의 순으로 분석된다.

2002년을 기준하여 보아도 단독범이 전체 범죄자 수의 64.2%인 219,697명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친인척으로 3.9%인 13,184명이고 직장동료가 1.9%인 13,184명, 학교동창이 1.5%인 5,087명, 애인이 1.2%인 4,17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범죄자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지, 동창, 애인 등 상시 접촉하는 자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범죄로의 접촉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활의 범위, 인간관계 등이 범죄로의 접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여성범죄자 공범관계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연도	단독범	공범관계별 분포									미상	계
		학교 동창	교도소 동료	직장 동료	친인척	군동료	동네 친구	고향 친구	애인	기타		
1997	170,178 (61.2)	4,461 (1.6)	42 (0.0)	3,210 (1.2)	11,954 (4.3)	24 (0.0)	3,008 (1.1)	405 (0.1)	4,062 (1.5)	40,305 (14.5)	40,268 (14.5)	278,007 (100)
1998	213,569 (63.0)	3,538 (1.0)	39 (0.0)	3,820 (1.1)	13,998 (4.1)	52 (0.0)	3,506 (1.0)	422 (0.1)	4,462 (1.3)	46,874 (13.8)	48,834 (14.4)	339,104 (100)
1999	228,433 (62.8)	4,157 (1.1)	47 (0.0)	4,735 (1.3)	17,477 (4.8)	36 (0.0)	3,857 (1.1)	553 (0.2)	4,564 (1.3)	57,002 (15.7)	42,827 (11.8)	363,688 (100)
2000	205,908 (62.8)	5,172 (1.6)	32 (0.0)	5,095 (1.6)	15,966 (4.9)	34 (0.0)	4,658 (1.4)	570 (0.2)	4,424 (1.3)	53,321 (16.3)	32,946 (10.0)	328,126 (100)
2001	219,752 (63.7)	5,698 (1.7)	37 (0.0)	6,121 (1.8)	14,813 (4.3)	39 (0.0)	4,401 (1.3)	557 (0.2)	4,538 (1.3)	55,701 (16.2)	33,098 (9.6)	344,755 (100)
2002	219,697 (64.2)	5,087 (1.5)	27 (0.0)	6,494 (1.9)	13,184 (3.9)	27 (0.0)	3,906 (1.1)	562 (0.2)	4,177 (1.2)	54,886 (16.0)	34,291 (10.0)	342,338 (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8-2003.

5. 發生原因別 女性犯罪者 現況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동기에 따른 범죄자의 분포현황은 <표 14>와 같다. 주목할 점은 사행심에 의한 범죄현상의 증가추세이다.⁵⁴⁾ 범죄에 있어서 경제적 동기가 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사행심에 의한 범죄는 그 나라의 제도, 사회적 형태, 가정생활 환경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여성범죄자 발생원인별 분포를 보면 이욕이 전체의 21~29%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다. 2002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욕이 22.55%인 77,181명, 우발적 범죄가 15.50%인 53,059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실하게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것보다 노력 없이 목적을 추구하려는 사회전체 분위기 영향하에서 사행심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암수범죄의 형태로 남성범죄와 공모 또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범죄로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4> 여성범죄자의 발생원인별 분포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이 욕	사행심	보 복	가 정 불 화	유 욕	우발적	호기심	현 실 불 만	기 타	계
1994	47,199 (21.06)	3,524 (1.57)	1,027 (0.46)	1,771 (0.79)	1,223 (0.55)	22,227 (9.92)	1,393 (0.62)	1,713 (0.76)	144,041 (64.27)	244,118 (100)
1995	74,176 (29.02)	4,144 (1.62)	1,384 (0.54)	2,168 (0.85)	1,604 (0.63)	43,159 (16.88)	2,539 (0.99)	2,789 (1.09)	123,672 (48.38)	255,635 (100)
1996	74,836 (25.97)	4,696 (1.63)	1,524 (0.53)	1,999 (0.69)	1,655 (0.57)	46,249 (16.05)	4,634 (1.61)	3,244 (1.13)	149,363 (52.82)	288,200 (100)
1997	71,815 (25.83)	4,565 (1.64)	1,566 (0.56)	1,606 (0.58)	1,729 (0.62)	47,171 (16.97)	5,610 (2.02)	3,561 (1.28)	140,384 (50.50)	278,007 (100)
1998	91,702 (27.04)	4,528 (1.34)	1,481 (0.44)	2,193 (0.65)	2,740 (0.81)	56,791 (16.75)	3,836 (1.13)	3,114 (0.91)	172,719 (50.93)	339,104 (100)
1999	94,777 (26.06)	4,328 (1.19)	1,861 (0.51)	3,752 (1.03)	2,478 (0.68)	74,465 (20.47)	2,243 (0.62)	5,004 (1.38)	174,780 (48.06)	363,688 (100)
2000	77,241 (23.54)	4,555 (1.39)	1,983 (0.60)	4,415 (1.35)	1,563 (0.48)	82,931 (25.27)	1,873 (0.57)	3,444 (1.05)	150,121 (45.75)	328,126 (100)
2001	82,378 (23.89)	4,855 (1.41)	1,803 (0.52)	4,268 (1.24)	2,673 (0.78)	90,889 (26.36)	2,711 (0.79)	3,566 (1.03)	151,612 (43.98)	344,755 (100)
2002	77,181 (22.55)	4,631 (1.35)	937 (0.27)	2,047 (0.60)	2,436 (0.71)	53,059 (15.50)	2,324 (0.68)	2,266 (0.66)	197,457 (57.68)	342,338 (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2003.

54) 허경미, “우리나라 범죄에 관한 기초적 연구”, 「치안논총」 제7호, 경찰대학치안연구소, 1990, p. 251.

6. 前科者別 女性犯罪者 分布

여성범죄자의 전과자별 분포는 <표 15>와 같다. 여성범죄자로서의 여성은 2002년을 기준하여 볼 때 우리나라 전체 여성인구의 1.42% 내외의 범위이다. 그러나 1993년 초범자인 여성범죄자가 전체여성범죄자의 73.81%인 153,324명이었으나 2002년을 기준하여 보면 54.16%로 185,431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대다수가 전과자로 기소되어 교화과정을 거쳤으나 다시 범죄로의 길에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범인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1993년 13.17%인 27,363명이 2002년에는 여성전체범죄자의 16.22%인 55,536명으로 10년간 약 202%의 증가를 보인다는 것이다. 2범 이상 누범자인 경우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5> 여성범죄자의 전과자별 분포

단위 : 명(%)

전과 연도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미상	계
1993	153,324 (73.82)	27,363 (13.17)	11,948 (5.75)	6,237 (3.00)	3,351 (1.61)	5,484 (2.65)		207,707 (100)
1994	141,231 (63.01)	26,747 (11.94)	11,081 (4.95)	6,040 (2.69)	3,177 (1.42)	5,340 (2.39)	30,502 (13.60)	224,118 (100)
1995	149,650 (58.54)	32,194 (12.59)	14,068 (5.50)	7,247 (2.83)	4,062 (1.58)	6,988 (2.73)	41,426 (16.20)	255,635 (100)
1996	162,195 (56.27)	37,235 (12.91)	16,287 (5.65)	8,519 (2.95)	4,686 (1.62)	8,016 (2.78)	51,262 (17.78)	288,200 (100)
1997	156,786 (56.39)	37,101 (13.35)	16,415 (5.90)	8,587 (3.09)	4,791 (1.73)	8,389 (3.02)	45,938 (16.52)	278,007 (100)
1998	188,019 (55.45)	48,804 (14.39)	21,982 (6.49)	11,257 (3.31)	6,334 (1.86)	10,990 (3.24)	51,718 (15.26)	339,104 (100)
1999	203,505 (55.96)	56,020 (15.40)	25,044 (6.89)	13,622 (3.75)	7,804 (2.15)	13,185 (3.62)	44,508 (12.23)	363,688 (100)
2000	183,292 (55.86)	50,739 (15.46)	23,941 (7.30)	12,643 (3.85)	7,373 (2.25)	13,553 (4.13)	36,585 (11.15)	328,126 (100)
2001	190,433 (55.24)	54,550 (15.82)	26,039 (7.55)	14,203 (4.12)	8,126 (2.36)	15,414 (4.47)	35,980 (10.44)	344,755 (100)
2002	185,431 (54.17)	55,536 (16.22)	26,375 (7.70)	14,268 (4.17)	8,531 (2.49)	16,455 (4.81)	35,742 (10.44)	342,338 (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4-2003.

7. 少女犯罪者 分布 現況

청소년범죄자 분포 현황은 <표 16>과 같다. 청소년범죄자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1993년 110,604명이었으나 1997년 150,19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1997년 대비 98.9%로 감소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감소추세는 2002년 115,423명으로 계속하여 지속되어지고 있다.

여자소년범의 경우를 보면 1993년 6,340명으로 전체소년범의 5.7%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에는 18,518명으로 전체소년범의 16%를 차지하여 성별범죄자 점유비율에 있어서도 여자소년범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자소년범은 지난 10년간 약 292%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소년범은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부터 범죄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으나 여자 소년범은 오히려 2002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음은 과거에 비하여 성인 여성뿐만이 아닌 여자 소년들의 활동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6> 청소년범죄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남 자	여 자	여 자 비(%)
1993	110,604	104,264	6,340	5.7
1994	108,342	101,328	7,014	6.5
1995	124,444	115,290	8,954	7.2
1996	137,503	126,071	11,432	8.3
1997	150,199	137,546	12,653	8.4
1998	148,558	133,486	15,072	10.1
1999	143,155	124,612	18,543	13.0
2000	143,643	125,156	18,487	12.8
2001	130,983	110,535	20,448	18.4
2002	115,423	96,905	18,518	16.0

주 : 여자비=여자/전체 소년범죄자×100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3.

第3節 女性犯罪者の 處分現況

1. 統計의 比較 分析

전체 범죄자의 기소율과 여성범죄자의 기소율은 <표 17>과 같다. 전체 범죄자의 기소율은 1993년도 전체 범죄자 1,779,228명에서 기소자 923,434명으로 기소율을 51.90%이나 1993년 여성 전체범죄자수 207,707명에서 기소자 78,333명으로 37.71%로 전체 기소율에 비하여 약 14%가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범죄가 남성에 비하여 우발적이고 기회성의 범죄나 생계난으로 인한 범행이 많고 범법행위는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를 취한데 대하여 약식재판에 붙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⁵⁵⁾

<표 17> 전체범죄자 및 여성범죄자 처분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전체범죄자			여성범죄자		
	전체 범죄자	기소된자	기소율(%)	전체 범죄자	기소된자	기소율(%)
1993	1,779,228	923,434	51.90	207,707	78,333	37.71
1994	1,706,642	856,374	50.17	224,124	90,695	40.46
1995	1,804,405	885,949	49.09	255,635	96,211	37.63
1996	1,922,549	954,322	49.63	288,200	107,332	37.24
1997	1,986,254	1,069,340	53.83	278,007	111,466	40.09
1998	2,196,526	1,196,363	54.46	339,104	146,466	43.19
1999	2,306,824	1,194,863	51.79	363,688	147,870	40.65
2000	2,241,635	1,200,986	53.57	328,126	137,757	41.98
2001	2,321,580	1,306,204	56.26	344,755	153,501	44.52
2002	2,297,030	1,333,682	58.06	342,338	159,691	46.64

주 : 기소율은 (기소된자/전체범죄자×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4-2003.

55) 김수길, 전계논문, p. 103.

2002년도 여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분 결과를 보면 기소율이 46.6%로 총범
 죄자 기소율 58.0%보다 11.4% 포인트 낮고, 불기소율은 52.6%로 총범죄자
 불기소율 40.9%보다 11.7% 포인트 높으며, 기소 중 구속 기소율은 2.2%로
 총범죄자 구속기소율 3.9%보다 1.7% 포인트 낮고 불기소 중 기소유예율은
 15.4%로 총범죄자 기소유예율 11.4%보다 4% 포인트 높게 나타난다.⁵⁶⁾

<표 18> 여성범죄자 처분결과(2002년도)

단위 : 명(%)

죄종별	처분 결과	계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불 기 소							
			소 계	구 공 판				소 계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구약식
계	총 범죄자	2,297,000 ① 100.0	1,333,682 (58.0)	89,165 (3.9)	73,885 (3.2)	1,170,622 (50.9)	19,742 (0.9)	4,966 (0.2)	938,640 (40.9)	282,455 (11.4)	162,029 (7.1)	26,146 (1.1)	220,508 (9.6)	1,979 (0.1)	265,523 (11.6)
	여 성 범죄자	342,338 ① 100.0	159,691 (46.6)	7,579 (2.2)	9,884 (2.9)	142,228 (41.5)	2,279 (0.7)	474 (0.1)	179,894 (52.6)	52,685 (15.4)	27,760 (8.1)	5,009 (1.5)	49,642 (14.5)	454 (0.1)	44,334 (13.0)
형법범 범	총 범죄자	994,628 ① 100.0	379,541 (38.1)	57,166 (5.7)	35,675 (3.6)	286,700 (28.8)	16,665 (1.7)	4,949 (0.5)	538,443 (53.7)	135,330 (19.6)	110,054 (11.1)	20,718 (2.1)	173,110 (17.4)	1,813 (0.2)	92,418 (9.3)
	여 성 범죄자	181,124 ① 100.0	51,520 (28.4)	5,716 (3.2)	5,619 (3.1)	40,185 (22.1)	2,010 (1.1)	469 (0.3)	127,125 (70.2)	40,986 (22.6)	24,532 (13.6)	4,280 (2.4)	40,904 (22.6)	426 (0.2)	15,967 (8.8)
특 별 법 범	총 범죄자	1,302,402 ① 100.0	954,141 (73.3)	31,999 (2.5)	38,220 (2.8)	883,922 (67.9)	3,047 (0.2)	17 (0.0)	345,197 (26.5)	67,125 (5.2)	51,975 (4.0)	5,428 (0.4)	47,398 (3.6)	166 (0.0)	173,105 (13.3)
	여 성 범죄자	161,214 ① 100.0	108,171 (67.1)	1,863 (1.2)	4,265 (2.6)	102,043 (63.3)	289 (0.2)	5 (0.0)	52,769 (32.7)	11,709 (7.3)	3,168 (2.0)	729 (0.4)	8,738 (5.4)	28 (0.0)	28,397 (17.6)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

2. 女性犯罪者の 類型別 處分 現況

1) 여성범죄자중 형법범 처분현황

우리나라 여성에 의한 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하여 미약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고 남성에 비하여 범죄의 형태 및 종류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 이
 르러 남성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형법범의 기소율을 전체범죄의 기소

56)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 p. 29.

현황과 비교하여 보면 1993년 총 범죄자 446,554명중 154,550명이 기소되어 34.60%가 기소되었고 여성범죄자는 총범죄자 80,726명중 22,385명이 기소되어 27.7%의 기소율을 보임으로서 전체 기소율 보다 약 7% 포인트 낮게 나타난다. 또한 2002년을 기준하여 보면 총 범죄자가 994,628명중 379,541명이 기소되어 38.15%의 기소율을 보였고 여성범죄자는 181,124명중 51,520명이 기소되어 28.44%의 기소율을 보임으로서 전체 형법범보다 기소율이 약 10% 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형법사범의 경우 전체 범죄자 평균 기소율 34.09% 보다 여성범죄자 기소율이 평균 24.13%로 평균적 수치를 보더라도 약 10% 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범죄에 비하여 여성범죄는 죄종 및 죄질에 있어서도 미약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과 아울러 여성이라는 성적 특성을 고려한 관대한 처분 등이 기소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9> 형법범 처분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전체범죄자			여성범죄자		
	전체범죄자	기소된자	기소율(%)	전체범죄자	기소된자	기소율(%)
1993	446,554	154,550	34.60	80,726	22,385	27.72
1994	442,634	129,052	29.15	90,363	19,717	21.81
1995	517,925	140,347	27.09	114,015	23,337	20.46
1996	584,201	156,221	26.74	134,883	27,657	20.50
1997	544,470	153,407	28.17	120,607	25,876	21.45
1998	633,107	187,141	29.55	143,011	32,349	22.61
1999	685,993	209,958	30.60	151,277	36,216	23.94
2000	599,992	195,892	32.64	122,459	32,216	26.30
2001	593,666	203,218	34.23	123,177	34,621	28.10
2002	994,628	379,541	38.15	181,124	51,520	28.44

주 : 기소율 (기소된자/ 전체범죄자×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4-2003.

2) 여성범죄자중 특별법범의 처분현황

여성범죄자중 특별법범에 대한 전체범죄자수와 비교한 처분현황은 <표 20>과 같다. 전체 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최근 10년을 평균으로 볼 때 약 62%의 기소율을 보이며 여성범죄자는 약 55%로 전체범죄자 기소율과 비교하여 볼 때 여성범죄자가 약 7% 포인트 정도 기소율이 낮게 나타난다.

2002년을 기준하여 볼 때 전체 범죄자 1,302,402명 중 954,141명이 기소되어 기소율 73.26%를 보인 반면 여성범죄자는 161,214명 중 108,171명이 기소되어 67.09%를 보임으로써 전체 범죄자 기소율 73.26%보다 여성범죄 기소율이 약 6% 포인트 낮게 조사되었다. 여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범죄의 동기, 수법, 피해정도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남성범죄보다도 상대적으로 나약한 여성에 대하여 남성과는 다른 입장에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0> 특별법범 처분현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단위 : 명

구분 연도	전체 범죄자			여성 범죄자		
	전체 범죄자	기소된 자	기소율(%)	전체 범죄자	기소된 자	기소율(%)
1993	1,332,674	768,884	57.69	126,930	75,984	59.86
1994	1,264,008	727,322	57.54	133,761	70,978	53.06
1995	1,286,480	745,602	57.95	141,620	72,874	51.45
1996	1,338,348	798,101	59.63	153,317	79,675	51.96
1997	1,441,784	915,942	63.52	157,400	25,590	54.37
1998	1,563,548	1,009,222	64.54	196,093	114,117	58.19
1999	1,620,831	984,905	60.76	212,411	111,654	52.56
2000	1,641,643	1,005,094	61.22	205,667	105,541	51.31
2001	1,727,914	1,102,986	63.83	221,578	118,880	53.65
2002	1,302,402	954,141	73.26	161,214	108,171	67.09

주 : 기소율은 (기소된자/전체범죄자×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4-2003.

第4章 女性犯罪의 對策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로 나타난 여성범죄의 실태를 토대로 하여 여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범죄 후 또다시 범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후 대책을 정리하였다.

第1節 豫防 對策

1. 教育的 豫防策

범죄예방이란 범죄발생 및 범죄자로의 성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이다.⁵⁷⁾ 범죄 예방이 형사정책상 중요한 이유는 첫째, 범죄가 이미 발생한 후에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둘째, 범죄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범인검거와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낭비가 심하며 셋째, 범죄자들은 흔히 일단 범죄자로 검거되고 처분 또는 처분을 받기 시작하고부터는 교정이 어렵거나 그 자신이 극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넷째, 범죄사건이 발생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인간관계에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이다.⁵⁸⁾ 그러므로 범죄 또는 비행으로의 가능성 및 여건을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거나 또는 약화시킴으로서 사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여성범죄에 대한 교육적 예방책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의 발달에 일차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형식적인 기관으로 가정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학교라는 교육적 공간이 있으며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서로 조화

57) 김수길, 전제논문, p. 105.

58)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87, pp. 465-466.

롭게 작용하여 한사람으로서의 소질을 획득하게 하고 이러한 소질이 정상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으로 접근하기도 하며 비행 또는 범죄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1) 가정환경과 교육으로서의 예방책

가정이라는 최소규모의 사회는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고 구성원이 되는 사회적 환경이며 또한 성장과정에서도 그 생활의 안식처로 기능하는 지극히 중요한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라 할 수 있다.⁵⁹⁾ 따라서 가정에 여러 가지 결손적 여건과 장애요소들이 있으면 가정의 본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격형성과 가치관, 생활태도 등 형성에 결합적인 요소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가정의 기능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작용할 때 개인의 범죄적 성향과 관련되어 가정 내에서의 범죄요인들이 제거되기 때문이다.⁶⁰⁾ 올바른 가정은 가정을 사회로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인 자녀에 대하여 필요태도, 가치관, 사고와 행동방식 등을 민주적으로 사회와 접촉시키고 대인관계 면에서도 사회화라는 접촉방식으로 접근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상적인 부모와 가정적 환경은 자녀로 하여금 그만큼 비행 가담 확률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 여성범죄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주적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한다.⁶¹⁾ 우리나라의 가정은 전통적으로 부모의사 우선 경향이 있고 최소 사회인 가정내에서 대화가 부족하여 가족간의 단절현상에 대한 결과로 가정 외로의 탈출구를 찾게 하고 비행의 여건들을 접촉하게 하며 비행 또는 범죄로 발전하는 것이다. 특히 가정내에서 남녀간의 성적 차별이나 성장여건의 차별 등은 성장 후 사회환경내에서의 생활 적응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범죄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동등하고 민주적인 성장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부모들의 인식적인 전환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모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계몽 또는 교육이 요구된다.

59) 김수길, 전계논문, p. 106.

60) 박경선, 전계논문, p. 95.

61) 상계논문, p. 97.

둘째, 가정주부들의 시간적 여유를 생산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되어야 한다.⁶²⁾ 가치 있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회적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야 하며 여성자신에 대한 자아개발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 교육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2) 학교교육의 제도적 개선을 통한 예방책

교육이란 신체적, 정신적 및 인간행동의 변화를 촉진하여 이상적인 상태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학교교육은 교과지도 중심으로 치우쳐 생활지도 및 전인격적인 지도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은 대량의 교육으로 인하여 다양화하는 현대사회의 교육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⁶³⁾ 여성의 특화교육이 미약한 상황이고 다양화 추구의 현대 사회의 여성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인격존중, 개인의 독립, 인간 근본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 등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휘케 함으로서 가능하다. 여성의 사회적 기대수준을 향상시키고 여권신장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는 사회생활로 가는 준비단계의 과정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사고와 행동양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학문적인 것과 통일적인 것들의 요구보다 개인적인 요소들에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적인 부분과 성장과 교육단계에서의 갈등적 요인들을 해소 시켜줄 수 있는 방안과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즉, 학문과 성적, 처벌 중심의 교육적 환경과 프로그램에서 선도하고 대화하는 민주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 인성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여성범죄 예방책차원에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62) 강석산, 전계논문, pp. 100-112.

63) 김수길, 전계논문, p. 107.

- 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한다. 남성위주의 경제에서 여성도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가사노동 중심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야 한다.
- ② 성교육을 충실히 어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임신으로 인한 낙태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임방법, 낙태의 허용범위, 허용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교육의 목표가 과감히 수정 개선되어야 한다. 성적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처벌위주의 교육적 형태는 사회구성원이 되어 사회조직에서 활동할 때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 ④ 외래문화는 엄정한 선택 후 도입되어야 한다. 정보화에 따른 정보의 범람 등이 생활의 패턴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많지만 불량한 외래문화 및 정보의 공급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여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⑤ 학문적 가치보다 진로교육 또는 진실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상담교육 내지 상담제도를 강화하여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입시제도의 개선, 강화, 변형 등이 교육제도의 개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학문적 수치보다 인격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3) 사회교육 강화로서 여성범죄의 예방책

사회교육은 형식적인 학교교육 이외에 비형식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의 대상, 연령, 장소, 시간,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규정이나 제도를 벗어나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성인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포함한다.⁶⁴⁾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가치관, 태도, 윤리적 행위, 사회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또는 규범, 대인관계의 절차와 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케 함은 여성의 사회화 진출에 크게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순응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64) 상계논문, p. 107.

- ① 모두를 위한 교육, 일생을 통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회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과 기존의 사회구성원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적 정보의 제공과 과정이 필요하다.
- ② 여성을 위한 기술교육 또는 직업훈련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안정된 직업획득 기회를 지원할 수 있고 여성의 일탈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성범죄는 현황분석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범죄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가정의 빈곤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가정주부의 여유시간의 적절치 못한 활용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건전한 여가 활동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적 틀과 정보의 공급 및 교육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형태의 기술교육 등이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여성의 범죄예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2. 社會·政策的 豫防策



1) 모자가정에 대한 정책의 배려

남편과 사별이나 이별로 인하여 가정의 기본적인 미래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특별한 복지정책적 기준과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경제여건이 어려워 강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모자가정의 경우 정신적, 물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가족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성실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호간에 갈등적 가정생활을 유발하게 한다. 모자가 스스로 가정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⁶⁵⁾

- ① 지원이 필요한 모자가정에 대하여 생활비 지원, 직업의 적극적 알선, 금융지원제도의 신설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65) 장인섭, 전계논문, pp. 26-27.

- ② 모자가정을 상대로 하는 상담기구의 편성으로 도와주고 지도하는 체제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 ③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결정이 요구된다. 여성단체, 사회복지단체들의 활동은 경제적, 인력적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광범위한 사안이므로 공적인 조직과 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한다.

2) 미혼모에 대한 정책의 배려

미혼모의 발생원인을 보면 비정상적인 가족체제 속의 성장, 성에 대한 개방적 사고, 성지식 또는 성관련 교육의 부재에 따른 무예방적 이성교재 그리고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임신에 있다 하겠다.⁶⁶⁾ 이러한 미혼모는 소외감, 자책감 등으로 방황하게 되고 자살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인생을 포기하여 윤락여성으로의 전락, 절도, 살인 등을 유발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미혼모에 의한 아기들은 양육적 여건의 부재와 함께 곧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이러한 미혼모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과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 ① 미혼모 발생의 예방적 조치는 가정환경의 건실화에 우선적 노력이 요구되고
- ② 여성의 성장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에대한 올바른 유도가 필요하며
- ③ 미혼모 발생 후 미혼모를 위한 탁아소설립, 직업교육 등을 통하여,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가출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구성

여성의 가출 동기는 구직, 가족체제의 불화 또는 단절, 가정경제의 빈곤, 가정 내에서의 방임 등 주로 가정적인 이유와, 허영심, 도시에 대한 동경 등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 가출은 가출 자체 및 결과가 곧 사회의 문제로 야기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출은 곧 범죄의 전단계적인 행위라 할 수 있어 이러한 무단가

66) 김수길, 전계논문, p. 109.

출의 형태의 행동을 보이는 여성에 대한 가출예방 또는 사후 보호를 위해서

- ① 가정체계의 정상화로 기능수행이 강화될 수 있어야하고 결혼형태의 가정의 경우 이를 보완하여 정상적인 가정조직으로 재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사회의 환경적 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 ③ 직업알선의 공적인 운영과 적극적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 ④ 가정경제의 빈곤에서 회생할 수 있는 최소여건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적 정책의 집행이 요구된다.

4) 성교육 및 낙태관련 법규의 개선

우리나라 낙태문제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과 같이 헌법규정에 현존하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낙태 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⁶⁷⁾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낙태죄에 관련된 여성범죄 증가현상은 형사 정책적 과제이고 낙태죄의 허용범위를 조정하는 형법조항의 정비도 요구된다. 낙태죄에 관한 현행규정처럼 현실과 거리를 둔 실효성이 없는 형법규정으로 두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준법의식만 불량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낙태는 성생활의 순수성을 잃게 하고 성생활을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격하시킬 뿐 아니라 결혼의 순결과 정조개념 및 사회의 성윤리를 문란케 할 수 있다.⁶⁸⁾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에 의사나 임산부 모두를 인명을 경시하는 사상을 없앨 수 있도록 현실화 또는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한 법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第2節 事後 對策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여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이미 진행된 범죄에 대하여는 교정기관이나 시설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범죄에 따른 처벌중심의 교정이 아닌 가능한 최단의 시간내에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교화

67) 황경희, 전제논문, p. 68.

68) 이태재, 「법철학사와 자연법론」, 법문사, 1984, p. 293.

개선하여 가정 또는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 주어야한다.⁶⁹⁾ 수형자의 교정 및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불교에서는 여성 범죄의 교정을 담당하는 교도서가 있다. 그들이 출소한 후 사회내에서 자립하고 갱생할 수 있도록 보호활동을 행사하는 갱생보호회의 기능과 실태 등을 검토하여 보고 개선책을 강구하여보기로 한다.

1. 施設內에서의 處遇改善

오늘날의 형사정책상 기본입장은 범죄인을 개선, 교화하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정을 구하고자 함이다.⁷⁰⁾ 과거에는 형벌을 범죄 행위에 대한 응보로서 인식되었고 형벌의 위하력에 의한 일반 예방적 효과가 범죄대책이었으나 최근 들어 실증주의 범죄학의 영향과 범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성과로 현대의 범죄 대책은 일반적으로 범죄인에 대해서는 형벌위주에서 비형벌적 형태의 교정교육 즉, 개선을 위한 처우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어 오늘날 선진제국의 행형이론과 행형제도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⁷¹⁾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행형환경은 행형법 자체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가 지극히 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

교정시설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수형자를 사회로 정상적인 복귀를 제1의 목표로 하는 시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⁷²⁾ 19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로의 진출 및 사회활동이 해마다 증가하여 이에 따른 경제, 사회활동에 편승한 여성범죄 또한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따라서 기존의 남성위주의 교정행정을 수정 보완한 청주여자교도소가 있으나 여성재소자의 처우를 고려한 행정으로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재소자의 교정처우의 다양한 변화와 개혁적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

69) 황경희, 전계논문, p. 69.

70) 조옥순, 전계논문, p. 71.

71) 이학의, “한국형사 정책에서의 교정이념과 현실”, 「형사정책」 제13호, 1988, p. 124.

72) 최종원, “시설처우 개선방안”, 「청소년범죄 연구」 제6집, 법무부, 1998, p. 288.

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자교도소의 충분한 시설 확충

여성은 남성과 다른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성 정서가 반영되고 의료시설이 일반적인 남성위주의 교도소와 달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기존의 교정시설인 청주 보안감호소를 개설한 청주 여자 교도소 한 곳 뿐이어서 여자 수형자의 특성 및 작업종류의 상이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처우를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여성 수형시설에는 산전·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지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설비가 완비되어야 한다.⁷³⁾ 여성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화 및 개선,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시설로서의 여성 수형자 전용교도소 시설 확충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⁷⁴⁾

현재 우리나라 여성수형자의 시설은 대부분 남자 수형자 시설 한 칸 경계를 설치 수용하고 있으며 취업 장별로 수용하고 우량수, 육아, 만기자 등에 대한 별도 수용도 못하는 실정이다. 직업 훈련 시설, 도서실, 취미 등 특별활동 공간이 미흡하고 운동장과 교회 등이 협소하여 교화, 교육, 운동 등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로 정부의 과감한 예산의 지원 및 투자로 시설의 신축 또는 개설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분류처우의 활성화

(1) 분류심사

분류심사는 그 분류심사의 단계에 따라 형집행 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에 대하여 행하는 신입심사와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행하는 재심사로 나누어진다. 범죄의 동기와 회수를 규명하여 개선과정의 난이도, 사고 발생가능성 유무 등 교정 보안상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성장과정, 교육정도, 가정환경, 지능지수 등을

73) 최응렬, “여성범죄자의 교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교정연구」 제8호, 한국교정학회, 1998, p. 356.

74) 조옥순, 전개논문, p. 72.

측정하여 교정·교화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직업, 근로의욕, 취미, 소질, 적성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교정과정에 부과할 작업종목과 훈련방법을 설정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보건 및 위생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 관계 등도 면밀히 조사하고 관리하여 교정과정을 마친 후 출소시 보호대책⁷⁵⁾ 등도 수립하는 과정으로 수형자 전반에 대한 조사, 심사, 관리의 기초적 정보의 분석 과정이며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

(2) 분류판정

분류심사를 토대로 개선급을 판정하며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아니한 자 중 범죄성향이 진전된 자로서 개선이 가능한 자, 범죄성향이 진전된 자 중 개선이 곤란한 자 등으로 분류하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수형자 개인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판정하고 분류하는 과정이다.⁷⁶⁾ 세밀한 교정·교화 과정을 거쳐 건전한 사고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하여는 개별적인 체계의 구성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행형제도상의 분류 처우의 목적을 수형자의 개성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위에 격리의 과학화, 처우의 개별화를 행하는 것이 교정처우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⁷⁷⁾

여성수형자를 분류함에는 수형자 개인의 개성, 능력, 형기, 범수, 죄질, 교육 정도, 가족관계, 범죄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개별화를 기하여야 한다. 이에선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사회학자, 사회사업가, 교육학자 등 전문적 훈련을 거친 전문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문적 진단과, 처우 및 치료를 면밀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산범, 풍속범, 폭력범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민주적, 인도적인 방법으로 행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국가

7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3, pp. 255-266.

76) 상계서, p. 266.

77) 김수길, 전계논문, p. 111.

의 지원도 요구가 되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수형자의 수형기간의 분류처우개선으로 전체형기를 효과적으로 교정에 부합하려면 수형기간 중 상당기간을 주로 시설내에서 구금하는 형태로 상당히 엄격한 형벌의 집행으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 다음 단계를 응보적 처벌로 인한 형법상 책임원칙⁷⁸⁾을 실현하고 나머지 기간을 사회에 복지를 위한 재사회화 기간의 수형생활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선택 또는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수형자와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수형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시도하여야 하겠다.⁷⁹⁾

3) 교정프로그램의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남성 수형자 처우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수형자 프로그램은 의료, 학과교육, 종교지도, 생활지도, 직업훈련, 민간인에 의한 교화 활동 참여 등이다. 개선 교육은 수형자의 개과천선이며 반사회성을 제거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수형자는 자유가 제한되고 사회로부터 격리, 구금된 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가 정상인과 다르다. 이에 따른 올바른 생활관과 준법정신의 확립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⁸⁰⁾ 여성 수형자에 대한 개설 교육은 여성의 섬세한 성격과 특수한 생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수가 적은 여성수형자를 위한 프로그램 준비시 남성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정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이 수

78)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책임정도를 초과하는 각종 형사특별법상의 과도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일반예방 내지 특별예방 목적을 달성하려 하므로 이를 행형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특별법에 의한 과도한 처벌의 가능성을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제한하기 위해서도 공정모델의 가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79) 김종덕, “범죄자 처우모델의 결합론적 모색”, 「교정연구」 제21호, 한국교정학회, 2003, p. 180.

80) 전영실,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6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p. 95.

형자의 정상적 사회 복귀 및 교화, 재범방지 등에 기여하게 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 개선교육의 보완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기본은 여성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개선교육 또한 남성 수형자와 다른 패턴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교정은 신상 필벌의 공정한 처우로 수형자의 악습을 올바르게 교정하여 교도소 내 생활의 질서를 확립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질서를 무시하고 방종 하는 생활에서 야기된 반사회적 의식 구조 및 생활습관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사소한 잘못도 엄히 다스리고 범법적 생활을 근본적으로 교정하여 법위반을 하고 살수 없음을 느끼게 하여 준법정신으로 생활할 때 개인의 권리와 자위가 보장됨을 확인 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윤리적 교육을 강화하여 도덕적 인생관을 올바르게 가지게 하고 자성과 이해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교육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생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화하여야 하며, 둘째, 엄정하고 공정한 처우로 준법정신으로 인한 개인 환경의 개선 과정에 대하여 확신을 주어야 하고, 셋째, 사회인으로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한 교육이 보완 시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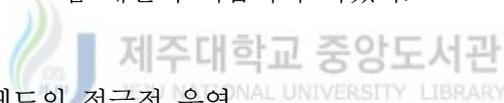
(2) 직업훈련의 강화

여성 수형자에게도 직업훈련을 실시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5~6개의 직종에 대하여 직업훈련이 실시되어 남성 수형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 직종에 국한되고 있다.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직종을 보면 한식조리, 미용, 양장봉제, 한복, 자수공예 등으로 수형자의 장래 사회활동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수형자를 위한 기술 교육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대부분 여성수형자들은 하루계층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출소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갖게 하는 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여성수형자들이 출소 후 재범으로의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다.⁸¹⁾

기존의 한정된 훈련종목에서 탈피하여 질적인 프로그램 개선 강화로 실질적인 확대 기술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그리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교육전문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훈련 직종과 훈련 내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경쟁을 통한 효과적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노동부와 달리 법무부는 폐쇄적 운영이 현실이며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기획에서부터 성과측정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⁸²⁾

교육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형식주의를 탈피하고 훈련생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⁸³⁾ 일반적 전달의 교육방법에서 수행자인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하여 본인의 것으로 흡수, 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3) 갱생보호제도의 적극적 운영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⁸⁴⁾ 교정시설에서 구금되어 있다 출소 후 재범의 길을 걸지 않도록, 사회의 재적응,

81) 상계논문, p. 30.

82)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은 제1단계 외부위탁교육(내부교육훈련프로그램발), 제2단계 공동경영(내부기관과 외부기관의 상호작용), 제3단계 자체실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자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단계와 2단계 과정에서 교육훈련기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노하우를 습득하고 조직 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83) 교육방법별로 학습효과(기억과 재생산)를 측정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듣기만한 경우 20%, 눈으로 보기만 한 경우 30%, 보고 들은 경우 50%, 보고 듣고 토의한 경우 70%, 보고 듣고 토의하고 연습체험한 경우 9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4) 법무연수원, 전게서, p. 344.

자립, 자치의 길을 조성하려면, 첫째, 국고보조금을 확대하여 갱생보호시설을 확대운영하고 운영 내용을 강화하여 상당 기간 동안 수용 보호를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둘째, 보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로 업무에 대한 세밀한 이해로 업무의 충실화를 기하여야 하고. 셋째, 취업을 위한 기능훈련의 지원과 취업에 대한 적극적 알선,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적 환경 제공의 지원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갱생보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형기를 마친 수형자가 사회로 흡수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4) 상담 요원의 확충 및 상담기구의 운영

범죄 유발요인 제거를 위하여는 심리적 불안 및 공포감을 없애고 마음속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상담원이 있어야 하며 상담 공간이 있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와 함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등의 해결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고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을 전공한사람들의 일정과정 이수 후 여성들을 위한 상담 기구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담시설을 여성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5) 치료 및 요양 기관의 운영의 강화

정신요법, 약물요법, 교육을 통한 치료, 환경의 조성, 정신요법을 위한 요양 기관의 운영 등의 필요하며 특히 여성 수형자의 경우 의료 및 모자보건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여성의 의료적 문제는 생리, 임신, 출산 등이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한 의료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 특성상 산부인과 등의 전문의가 없어 의료적 수준을 수형자에 맞출 수 없는 여건으로 여성 수형 시설의 경우 남성 수형시설보다 의료실 및 의료진의 강화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재생산 기능과 관련하여 본다면 의료 서비스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⁸⁵⁾

85) 조옥순, 전계논문, p. 76.

2. 社會的 處遇問題 改善

1) 가석방 제도 운영방안 개선

우리나라 여성범죄자 중 200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초범인 여성범죄자가 54.16%인 185,431명으로 나타났다.⁸⁶⁾ 현행법상 가석방은 소년 수형자의 경우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성인 수형자는 무기수, 유기수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하의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가석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범죄자 중 이들 초범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가석방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 제도는 수형생활 중 개선의 정이 현저하여 재차 범죄의 길로 들어설 우려가 없는 자에게 실시하는 제도로서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을 무기형은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 1/3을 경과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국 예규 “가석방 구조 업무개선”에 의하면 10년 이상 장기수 중 초범자는 80%, 재범자는 85%의 형집행을 한 후에 가석방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⁷⁾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석방 중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가석방기간동안 교정시설에 수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며 수형자 입장에서 보면 수형기간 만료 시 보다 훨씬 빨리 사회로의 복귀로 가능한 것이다. 2002년도의 경우 가석방제도를 적용한 수형자는 34명으로 여성 전체 범죄자중 0.9%에 불과하고 조사결과 남자수형자에 비하여 여자수형자의 가석방 기간 중 재입소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초범인 여성수형자의 가석방제도 적극 실시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취미활동의 강화

수형생활 중 학과공부 등도 중요하나 수형자 개개인의 취향과 정서에 맞는 취미활동의 공간과 폭을 넓게 할 필요가 있다. 취미를 같이 하는 수형자를 소

86)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 참조.

87) 김차승, “한국여성 범죄의 원인과 처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p. 83.

그룹으로 편성하여 꽃꽂이, 음악, 뜨개질, 건강체조, 독서, 화분 가꾸기 등 교정시설 내에서 허가 가능한 범위의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제공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시설 내 생활에서 자신의 재발견 내지는 변화로의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순히 교정시설은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기존의 교육적, 정서적 환경 제공에서 개개인의 재능 발견 및 포기하고 싶은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부공간이라도 우선 구성하고 활동하게 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수형자 및 사회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3) 외부통근 제도의 확대실시

1987년부터 시행된 외부통근 작업에서는 1일 8시간을 일할 경우 월 178,000원, 년 2,143,680원이 된다. 수형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숙련하고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만의 활동이 아닌 사회 내에서의 작업을 통하여 사회로의 적응 내지는 소속감을 고취시킴으로서 경제적 활동에 의한 개인적인 경제확보와 사회복귀의 친근성 면에서 볼 때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하겠다.

4) 교정참여의 확대

교정교화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과 교육을 비롯한 기술, 예능·의학 및 취미활동 종교생활 등에 이르는 여러 전문분야의 공통적·종합 참여가 요구된다.⁸⁸⁾ 이러한 종합적 교정을 위한 인력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화위원과 종교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교정교화업무 외에 종교 및 교육뿐만 아니라 교정시설내의 의료, 행정에 관한 업무까지로 가정주부, 학생, 전문인들로 자원봉사자를 구성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정처우의 개방화, 사회화 추세에 따라 사회

88) 상계논문, p. 84.

내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교정교화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교정 및 교화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되어야 한다.

5) 가족과의 관계기능 강화

남자수형자와는 달리 자녀가 있는 여성수형자의 경우 모성본능에 따라 자녀들의 생활에 대한 염려와 의기소침이 여성수형자의 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⁸⁹⁾ 예컨대, 수형생활을 자녀에게 알릴 것인지, 숨길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자녀와 이별로 인한 불안감, 무력감, 죄책감 등으로 수형자가 출소하여도 자녀들과의 모자간 공백기에 의한 관계복원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임신부인 경우와 수형자의 자녀가 유아인 경우이다. 교도소내에서 출산하는 경우 직접 시설 내에서 양육토록 하거나 국가기관이 양육할 수도 있으며 시설 외에 있는 가족에게 양육을 맡길 수도 있다. 현행 형법 제8조는 생후 18개월 이후에는 함께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수형자의 경우는 남성수형자에 비하여 도주의 염려 등이 현저히 낮으므로 수형생활 중 가족과의 유대관계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견제도 및 범위의 확대와 영유아 양육을 위한 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여성수형자별 여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단기수형자와 임신부 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성수형자에 대해 가족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수용관리도 용이하며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서 어머니의 비행이 자녀의 비행으로 이어지는 가정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수형자의 가족관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시설내 수용보다 지역사회 교정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실시함이 가장 효과적이며, 가택구금, 전자감시제도, 사회봉사 명령 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 실천으로 여성수형자의 수형자생활의 정서와 출소 후 재범이 아닌 완전한 사회복귀로 인하여 사회의 안녕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89)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1995, p. 275.

3. 女子非行青少年에 대한 矯正處遇

1) 보호관찰에서의 처우

보호관찰에 있어서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고려는 특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여자청소년을 만나는 빈도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월 1회가 보통이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서 개별대상자와 깊이 있는 면담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호관찰에 대한 여자청소년들의 태도를 보면, 월 1회 짧은 만남이므로 별 다른 의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존중해 주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플로리다 주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여성과의 멘토링, 임신·성·부모역할교육 등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러한 방안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적인 분위기를 중요시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⁹⁰⁾

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서의 처우

사회봉사명령에 있어서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방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회봉사 담당자에 의하면 여자 비행청소년에 대해 몇 가지 고려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봉사분야 선정에 있어서의 고려를 들 수 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기관에서 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임신할 경우에는 복지사와 개별 상담을 받게 하며, 간단한 일을 시키게 된다. 낙태, 출산 등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쉬다가 다시 남은 시간을 채우게 된다. 여자청소년에 대한 면접 결과를 보면, 봉사활동에 대해서 힘들었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봉사를 하게 되는 대상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에 따라 봉사 활동에 대해 긍정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관계에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논의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수강명령에 대해서 보면, 수강명령은 범죄특성에 대한 고려가 우

90) 전영실, “여자 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6호, 2003, 형사정책연구원, p. 28.

선적이고 주된 부분이 되므로 성병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강명령의 경우 소규모로 이루어지며, 위탁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사회복지기관에서 담당할 경우 복지사의 개별상담과 이러한 기관에서의 지지적, 수용적인 분위기는 여자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⁹¹⁾

3) 위탁시설에서의 처우

현재 여자비행청소년만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심산소녀학교와 대구가톨릭 여자기술원이다. 이 두 기관은 법원 소년부가 지정한 기타소년보호시설이다. 여기서는 이 두 곳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살펴보았는데, 실패를 살펴 본 결과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여자 비행청소년에게 중요한 가족적, 지지적 분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위탁시설 두 곳은 모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위안을 제공하며,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집단상담을 용이하게 실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심산소녀학교에 수용된 여자 청소년의 면접을 통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하게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이들의 자아존중감 강화, 장래 설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⁹²⁾

4) 소년원에서의 처우

소년원은 2000년 특성화 학교교육에 따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소년원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인성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인성부분 역시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안양소년원에서의 여자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된 처

91) 상계논문, p. 29.

92) 상계논문, p. 29.

우프로그램을 보면, 성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에 초점을 맞추는 성교육, 미용, 피부미용반 등의 직업훈련 등이 있다.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서 소년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가정관 이용이었으며, 다음은 가족결연, 종교활동 등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여자청소년들은 실용적인 것보다는 인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더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점수를 매겨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다. 고민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꾸중하거나 욕박지르지 않고 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등의 순이었다. 이런 항목들의 경우 동의비율이 50%를 상회하는데, 이 항목들을 보면 직업훈련의 경우만 실용적인 것이며, 다른 것은 주로 관계적 측면에 대한 것이다. 이렇듯 여자청소년의 경우 관계적 측면에 중요성을 두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⁹³⁾



5) 교도소에서의 처우

여자소년수형자의 경우 인원이 거의 없어서 독립된 교도소는 없다. 여자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청주여자교도소로 보내지는게 관례이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여자소년 수형자에 대한 고려사항을 보면 먼저,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여자 소년수는 분계된 장소에 수용되며, 그 밖의 일상 활동은 성인여성과 같이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년수 방에 배치되는 봉사원의 인원 및 선정요건, 공중전화사용, 상담간부 배정 등에 있어서 배려가 있다. 여자 청소년 비행자가 성인여자 범죄자와 공유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여자교도소에서의 기본적인 처우는 이들의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처우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⁹⁴⁾

93) 상계논문, pp. 29-30.

94) 상계논문, p. 30.

第5章 結 論

국가와 사회가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하려면 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며,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최소 집단인 가정이 건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범죄자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범죄의 대책에 관한 형사정책 연구원의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조사에서 대상자 모두가 가정의 안정을 여성범죄대책 중 가장 우선하여야 할 요소로 보았음도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갖게 되는 최초의 사회인 가정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여성범죄의 경우 남, 녀의 성별 차이라는 매개 변수에 따라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범죄의 경우 남성범죄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남성의 범죄비율이 높다 해서 모든 면에서 남성이 부도덕하고 악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여성의 범죄비율이 낮다하여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도덕적이지는 않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신체도 작고 힘도 약한 여성 특성상 공격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회와 집단이 바라는 여성상에 짜 맞추어져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는 오히려 여성범죄가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여성범죄의 일반적인 추세는 과거에 비하여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형태가 과격한 남성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진국가가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에 비하여 범죄발생율이 높다는 것은 세계 공통의 사항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문화가 발달하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으로써 여성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로 참여가 확대되고 여성 자신의 경제력도 신장됨에 따라 범죄원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식민지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생활의 척박한 경험과 물질만능주의를 회구하는 심리적 정서를 갖게 하였고, 1960~1970년대 이후 산업화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범죄의 양상이 변모되었다. 여성이 사회 경제적 활동이 미미했던 과거에는 범행의 기회가 적었

으나,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확대와, 여성인력의 필요, 적극적 활동의식 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의 여성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은 여성범죄가 양적, 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야기된 배경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범죄에 관한 국가기관의 통계표상 원인이나 동기는 다양하나 전체적인 변화추세는 사회체제의 변동과 관계로 가족제도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산업화체제의 변화,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 인구구성의 변화, 농촌에서 도시화로의 활동영역의 변화 등에서 오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죄질이나 죄종이 다양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여성범죄에 대한 특성 등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전체 범죄자 및 여성범죄자 증가율, 여성범죄자의 교육정도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현황과 처분현황 등을 통계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여성범죄의 발생에 대한 예방책 및 범죄 후의 사후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재범을 방지하여 형만기 출소 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완전한 복귀를 도모하고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범죄에의 예방적 측면과 범죄 후 사후대책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사전 예방 측면의 결론으로, 가정이라는 최소 규모의 사회이자 최초의 사회에서의 경험과 성장환경이 성장기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므로 가족간의 관계는 민주적이고 평등하여야 하며 인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가정주부의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여성의 성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고 성교육의 적극적 실시와 성적중심이 아닌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의 노력으로 모자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여건 제공 및 지원,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배려, 가출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확립, 낙태 관련 법규의 합리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제도의 개선과 함께 보다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 여건을 제공하고 보완하는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의 결론으로, 교도소의 시설을 여성의 성적 특성에 맞는 시설로 확충되어야 하고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처우를 개선하되 세밀한 관리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개선교육의 과정을 보완하여야 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기술함양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도 사회적응 및 사회필요 분야로 전환시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수형자의 정서 확보에 필요한 취미기능 활동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갱생보호제도의 적극적인 운영과 함께 전문화된 수형자 상담요원 확보와 상담기구의 설치 및 활성화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의 특성상 임신, 육아 등 독특한 가족적 여건을 가지므로 가족관계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형집행상의 탄력적 운영 및 방법의 개선과 함께 여성 생리적 특성에 맞는 치료 및 의료체제의 확보 및 정비가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여성범죄에 제대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의 노력과 함께 제도의 정비 및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를 수행한 본 논문이 여성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어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의 안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I. 국내문헌

1. 단 행 본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_____, 「형사정책」, 홍문사, 2003.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87.
_____,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법문사, 1990.
송광섭, 「형사정책」, 대왕사, 1996.
송태호, 「교정교육학」, 미리내, 1995.
이운호, 「교정학개론」, 박영사, 200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이태재, 「법철학사와 자연법론」, 법문사, 1984.
임 응,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임 응,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1995.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1999.
정영일, 「형법개론」, 박영사, 2003.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최인섭·전영실,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크라운출판사, 1992.
한가연, 「교육원리」, 박영사, 1983.

2. 논 문

- 강석산,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8.
_____, “여성범죄에 관한 소고”, 「논문집」 제4호, 경남대학교 대학원, 1989.
고형숙,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제19호, 법무연수원, 1992.
김미순,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1992.

- 김상균, “여성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4호, 한국 경호경비학회, 2001.
- 김성문, “대여성범죄 피해자 구호에 관한 소고”, 「수사연구」 제211호, 수사연구사, 2001.
- 김성호, “한국여성범죄 원인분석과 처우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제27호, 법무연수원, 2000.
- 김수길, “한국여성범죄의 현황분석과 그 예방책”, 「논문집」 제14호, 제주대학교, 1982.
- 김영태,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9호, 부산대학교, 1975.
- 김용준, 새로운 범죄자의 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석우차용석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94.
- 김정호, “여성범죄의 실제와 지도”, 「여성계」 제5권 10호, 여성계사, 1956.
- 김종덕, “범죄자 처우모델의 결합론적 모색”, 「교정연구」 제21호, 한국교정학회, 2003.
- 김차승, “한국여성범죄의 원인과 처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 노연호, “우리나라 여성범죄에 관한 일고찰”, 「녹우회보」 제27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1986.
- 민수홍, “여자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13권 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박경선, “여성의 특성과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 박광섭, “여성범죄의 실태 및 연구동향” 「법학연구」 제9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박미숙, “여성범죄문제에 대한 논의현황과 과제”,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59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박봉진,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박윤주, “여성범죄의 특질에 관한 소고”, 「경찰고시」 제57호, 경찰고시사, 1970.
- 송광섭·점승현, “여성범죄의 현황과 그 대처방안”, 「법학논총」 제4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 신석균, “한국여성 범죄에 관한 사회적인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6.
- 양영철,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21호, 한국교정학회, 2003.
- 오경식, “여성범죄의 원인과 유형 및 그 대책(상)”, 「교정」 제195호, 교정협회, 1992.
- _____, “여성범죄의 원인과 유형 및 그 대책(하)”, 「교정」 제196호, 교정협회, 1992.
- 오원선, “수형자 직업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1호, 한국교정학회, 2003.
- 윤옥경, “여성범죄”, 「여성논총」 제4집, 경기대학교 여성학연구실 여학생문화원, 2001.
- 이남훈, “한국여성범죄의 추세와 근본문제 분석”, 「한국사회과학논문집」 제8호, 한국사회과학연구원, 1988.
- 이보녕, “여성범죄의 추이 및 특징과 그 대책”, 「치안문제연구」 제178호, 치안문제 연구소, 1996.
- _____, “여성범죄의 현황과 원인, 대책”, 「단국법학」 제6호,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1997.
- 이용기, “여성범죄자의 특질과 그 대책”, 「경찰고시」 제57호, 경찰고시사, 1969.
- 이준현, “한국의 여성범죄”, 「세대」 제6권 1호, 세대사, 1968.
- 이학의, “한국형사정책에서의 교정이념과 현실”, 「형사정책」 제13호, 1988.
- 장병립, “여성범죄의 사회 심리적 고찰”, 「형성」 제10권 1호, 치형협회, 1961.
- 장상희, “여권운동과 여성범죄”, 「사회조사연구」 제11권 1호,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1996.
- 장석현, “여성범죄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3.

- 장중식,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제문제점”, 「교정연구」 제21호, 한국교정학회, 2003.
- 전영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범죄”,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16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3.
- _____, “여자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76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_____, “여자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_____, “여성의 폭력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8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_____,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 및 대책”, 「교정연구」 제22호, 한국교정학회, 2004.
- 정낙진, “여성범죄”, 「법정」 제19권 12호, 법정사, 1964.
- 정동욱, “ 여성범죄에도 관심을 가져야”, 「경영법무」 제27호,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6.
- 정준화,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현황과 그 대책”, 「입법조사월보」 제78호, 대한민국 국회, 1974.
- 정진연,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8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6.
- 정한식, “여성범죄의 증가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정현미, “여성과 범죄”, 「여성연구」 제48호, 한국여성개발원, 1995.
- 조옥순,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7.
- 조은경,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제9권 1호,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3.
- 조준현, “범죄학에서 본 여성범죄 소고”, 「교육연구」 제28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4.
- 조희진, “여성범죄 실태분석”, 「검찰」 제103호, 대검찰청, 1992.
- _____,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책”, 「여성범죄와 교정대책」, (한국교정학회 제15회 학술발표회 자료), 1998.

- 최윤수, “한국 여성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제26호, 관동대학교, 1998.
- 최응렬, “여성범죄자의 교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교정연구」 제8호, 한국교정학회, 1998.
- 최인섭,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최종원, “시설처우개선방안”, 「소년범죄연구」 제6집, 법무부, 1988.
- 한남제·이춘옥, “한국의 여성범죄”, 「사회과학연구」 제8호, 경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2.
- 한동운, “여성범죄”, 「교육논총」 제2권3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 한휘진,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1993.
- 허경미, “우리나라 여성범죄에 관한 기초적 연구”, 「치안논총」 제7호,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90.
- 황경희, “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 황성철, “여성의 사회적 일탈과 여성범죄의 변화양상”, 「여성연구논문집」 제8호, 부산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7.

3. 간행물, 기타.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81-2003.
-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2002.
- 법무부, 「법무연감」, 2003.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2-2003.

II. 국외문헌

- Ellis, Rondey A., Maggi O'Hara, M.S.W. and Karen Sowers, "Treatment Profiles of Troubled Female Adolescents : Implications for Judicial Disposition", *Juvenile and Family Court Journal*. 1999.
- Heimer, K, and S. D. Coster, "The Gendering of Violent Delinquency", *Criminology* 37(2), 1998.
- Kruttschnitt, C, "Violence by and Against Women : A Comparative and Cross-National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8, 1993.
- Miller, J., "Up It UP : Gender And The Accomplishment Of Street Robbery", *Criminology* 36(1). 1998.
- Muraskin, R., *It's Crime-Women and Justice*, Prentice Hall. Ogle, R, S., D. Maier-Katkin, and T . J. Bernard, 1995, "A Theory of Homicidal Behavior Among Women", *Criminology* 33(2). 2003.
- Sommers, I., and D. R. Baskin, "The Situational Context of Violent Female Offending",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2), 1993.
- Tyler, L., "Female Criminality : Traditional Theories vs. Telling It Like It 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21(2), 1997.

-Abstract-

A Study on Female Crime

Koh, Tae-ha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Kuhn

Even though the occurrence of female crimes in Korea is lower than that of male ones, such crimes are on the rise with the expans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This research is to draw precautionary measures against female offenses by making a comparative study of data on women's crimes attributable to a change in the texture of a society as well as in the domestic sex role and the enlargement of female territory brought about by their share in economic activities.

Social stability is a prerequisite for national prosperity, and a home, a fundamental unit of society, should be sound so that the community can be wholesome. Today, the general trend of women's crimes is that they are growing larger, intellectual, bold and even masculine.

The more growing society, economy and culture are, the more likely women are to commit a crime with the extension of both social life and economic power of women.

The fair sex crimes reflect a change of values arising from a change in the family system and social structure, and urbanization of the rural community.

Therefore, measures need to be prepared as the change of values leads to diversification of crimes.

The study is designed to prevent or put a curb on criminal acts.

It also aims to help facilitate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who are released on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punishment and preserve the order of society by deterring them from committing a second offense.

The conclusion in two aspects of crim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is as follows, based on what is in the paper.

Firstly, as far as the prevention of crime is concerned, a household should be a place where the personality of each member is respected, and should be managed in an impartial and democratic fashion. School education needs to be focused on human nature rather than scholarly attainment, and sex education has to be conducted with positiveness and method. In addition, government-level support is critical to rendering assistance to single mother families, showing concern over unmarried mothers, establishing a safeguard of runaway women and reforming abortion-related legislation.

Secondly, as for supervision, prisons exclusively for women need to be secured since women hav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trait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men. It is required that reformatory programs and vocational training be strengthened, moral education be intensified and medical facilities be in good shape so that female offenders can be rehabilitated,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correction and education. Besides, there should be a policy change such as a consolidation of relief and rehabilitation, and an active enforcement of both parole system and living-out system.

In conclusion, we must remain concerned about and keep up our study of female crimes in order to properly deal with them. And the whole nation should make a united effort to consolidate and improve the system. I hope that in this context, the research can be of help in addressing the issue of female offenses and consequently contribute to national peace and prosperity.